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28호

2017. 9. 21.(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607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6608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60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61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661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6612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661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6614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6615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6616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6617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661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661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6620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67
제6621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6622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제66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6624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662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66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662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662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92
제6629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94
제663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631호 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8
제663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6633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6634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6635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6636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07
제6637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6638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663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6640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13
제664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6642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664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6644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16
제6645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6646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6647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664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21
제6649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22
제665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6651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25
제665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6653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132
제6654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665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665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6657호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136
제6658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37
제6659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141
제6660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6661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666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6663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6664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6665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153
제6666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155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159
제6668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6669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	168
제6670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70

제6671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제66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667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72
제667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667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6676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규 칙]

제418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7
제418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3

[시의회 규칙]

제2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188
제30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89

[입법예고]

제2017-205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2
제2017-2053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3

◆ 고 시

제2017-330호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195
제2017-335호 가락삼익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5
제2017-337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204
제2017-3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207
제2017-3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214
제2017-340호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216
제2017-3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27

◆ 공 고

제2017-2016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228
제2017-201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28
제2017-202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31
제2017-2026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해제 공고	231
제2017-202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232
제2017-2031호 2017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매·설치 공고	233

제2017-203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한국체육대학교)	257
제2017-20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58

◆ 구 고 시

제2017-124호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259
제2017-125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260
제2017-115호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265
제2017-100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 도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노원구)	270
제2017-99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272
제2017-6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양천구)	275
제2017-66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고시(양천구)	276
제2017-80호 가산동 505-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금천구) ...	277
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관악구)	278
제2017-111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282
제2017-12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283
제2017-130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289
제2017-131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294
제2017-13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	299

◆ 구 공 고

제2017-11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북구)	300
제2017-1020호 지구단위계획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강북구)	303
제2017-87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마포구) ..	304
제2017-13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운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구로구)	306

제2017-125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관악구)	308
제2017-119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309
제2017-1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310
제2017-1198호 방배지구중심(내방역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서초구)	312
제2017-12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문화지구) 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314

◆ 사업소고시

제2017-1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6
제2017-1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6
제2017-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7
제2017-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7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7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분란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30교)”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31교)”으로, 자치구명란 중 “서초구(12교)”를 “서초구(13교)”로 하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이수중학교” 다음에 “내곡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서초구	내곡중학교	서초구 신원동 294 일원

별표 6 구분란 중 “본청(7교)”을 “본청(8교)”으로, “중부(2교)”를 “중부(3교)”로 하며, 중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다음에 “오디세이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중부 교육지원청	종로구	오디세이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송인동)

별표 7 교육지원청란 중 “동부교육지원청(16교)”을 “동부교육지원청(17교)”으로, 북부교육지원청(14교)”을 “북부교육지원청(15교)”으로, 중부교육지원청(12교)”을 “중부교육지원청(13교)”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21교)”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22교)”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23교)”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24교)”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23교)”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24교)”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15교)”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20교)”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18교)”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19교)”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17교)”을 “성북

강북교육지원청(18교)”으로 하고,

별표 7 자치구명란 중 “중랑구(8교)”를 “중랑구(9교)”로, “도봉구(3교)”를 “도봉구(4교)”로, “종로구(4교)”를 “종로구(5교)”로, “송파구(12교)”를 “송파구(13교)”로, “강서구(11교)”를 “강서구(12교)”로, “강남구(14교)”를 “강남구(15교)”로, “관악구(9교)”를 “관악구(11교)”로, “동작구(6교)”를 “동작구(9교)”로, “성동구(12교)”를 “성동구(13교)”로, “강북구(4교)”를 “강북구(5교)”로 하며,

별표 7 동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북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창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중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청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위례별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영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신구유치원”란 다음에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과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울상도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과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경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동부 교육지원청	중랑구	서울중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랑구 봉화산로 82(중화동)
북부 교육지원청	도봉구	서울신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봉구 방학로 247-21(방학동)
중부 교육지원청	종로구	서울청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로구 자하문로 105 (청운동)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송파구	서울영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파구 오금로57길 15 (거여동)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강서구	서울등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서구 강서로56나길 34 (등촌동)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강남구	서울포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남구 개포로22길 87 (개포동)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관악구	서울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악구 문성로28길 31 (신림동)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악구 남부순환로163길 14 (신사동)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동작구	서울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작구 장승배기로 160 (노량진동)
	동작구	서울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작구 노량진로26길 16-40 (본동)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작구 솔밭로 47 (사당동)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성동구	서울금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동구 무수막길 69 (금호동2가)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강북구	서울송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북구 삼양로20길 29 (송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8년 3월 1일로 서울특별시립 중학교 1개교, 각종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3개원 등 총 15개교(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신설(별표 2)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내곡중학교 (서초구 신원동 294 일원)

나. 각종학교 신설(별표 6)

- 본청 : 오디세이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

다. 유치원 신설(별표 7)

-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봉화산로 82(중화동)]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학로 247-21(방학동)]
- 중부교육지원청 : 서울청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자하문로 105 (청운동)]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영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오금로57길 15 (거여동)]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로56나길 34 (등촌동)]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포로22길 87(개포동)]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문성로28길 31 (신림동)]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부순환로163길 14(신사동)]
서울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승배기로 160 (노량진동)]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량진로26길 16-40 (본동)]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솔밭로 47(사당동)]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수막길 69(금호동2가)]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양로20길 29(송천동)]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나. 특히, 학교 내의 차별적·혐오적인 표현으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다. 따라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학생이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차별적 상황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9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하고, 제2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절 서울기록원

제1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에 둔다.

제120조(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제12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별표1 성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성동구 일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 ④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실국 소관업무 조정 및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관업무 조정

- 식품정책과 먹거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업무 명시
- 기후환경본부 부서 직제순 변경·업무이관 반영을 위한 업무 조정

나. 사업소 신설 및 변동사항 현행화

- 기록물보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
- 성동소방서·서울식물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소재지 변경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603”을 “17,771”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734”를 “9,87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6,921”을 “6,951”로 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4%이내	33%이내	34%이내	14.5%이상	1%이내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603”을 “17,771”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87”을 “9,909”로 한다.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31	139	16	7	65	4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401”을 “9,519”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42”를 “358”로 한다.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57	3		32	22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288”을 “301”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921”을 “6,951”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886”을 “6,91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안사업 추진 및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 민생안전·복지·소방 등 시민생활 밀착 분야 지원(+111명)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병동보호사 확충 등(+28명)
 - ▶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30명)
 -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민생사법경찰단 기능강화, 아동보호 인력 확충 등(+53명)
- 현안 시책사업의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력 보강(+57명)
 - ▶ 서울기록원, 공예박물관, 공평유구전시관 등 건립 및 운영(+38명)
 - ▶ 봉제산업 육성, 저출산대책 추진 및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19명)

나. 행정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직급별 준비비율 조정

-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성 및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직 직급별 정원기준 변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3.5% 이내 (+0.5%p.)	14% 이내 (+1%p.)	33% 이내(-)	34% 이내(-)	14.5% 이상 (△1.5%p.)	1% 이내(-)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 일자리노동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구청장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정책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구청장
문화융합경제과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0조, 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폐쇄 및 수거 마. 청 문 바. 수수료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법 제29조 ○ 음악산업법 제30조 ○ 음악산업법 제31조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 업법 시행령 제17조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나.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다. 부정 계량기의 처리 라. 과징금 마. 지위승계 바. 청 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4항, 제5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4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구청장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43조	구청장
	4.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5.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대부업법 제12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대부업법 제13조	
	마. 실태조사 등	○ 대부업법 제16조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 대부업법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대부업법 제21조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마. 감사의 추천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구청장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이라 한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 여객자동차법 제9조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1. 차량의 연장 (차량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 나목, 제15호가목, 나목, 제16호나목, 제24호라목마목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2.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다. 등록의 거부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마. 변경등록의 처리 바. 이전등록의 처리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차. 압류등록의 처리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28조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2.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16호까지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5조	
	나. 임대허가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16호까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1조	구청장
	1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37조	구청장
	15.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16.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 여객자동차법 제16조제2항,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구청장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 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 목까지 「정기간행물법」 이 라 한다) 제15조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 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 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 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 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 석유사업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 석유사업법 제12조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석유사업법 제30조	
	사. 보고 및 검사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아. 청 문	○ 석유사업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석유사업법 제33조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석유사업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 문 바. 과태료 부과 · 징수 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 제31조제1항 · 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2호, 제5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 조	구청장
	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신고필증 발급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제2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취소	○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구청장
	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사업법」 제108조	구청장
	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 「전기공사업법」 제27조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구청장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변화대응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황합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합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사. 청 문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구청장

[illegible]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다. 과징금의 처분 등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아. 청문의 실시 자. 과태료 부과징수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 건설폐기물법 제23조 ○ 건설폐기물법 제26조 ○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건설폐기물법 제31조 ○ 건설폐기물법 제57조 ○ 건설폐기물법 제66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생활환경과	1.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 68조	한강사업 본부장,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의회내 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라. 호봉승급 2. 시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	시의회 사무처장 시의회 사무처장 당해 보조기관의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 이라 한다) 제12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법 제14조 ○ 체육시설법 제17조 ○ 체육시설법 제19조 ○ 체육시설법 제27조 ○ 체육시설법 제28조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체육시설법 제36조 ○ 체육시설법 제40조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다. 지도와 명령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 「의료법」 제59조제1항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류관리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 마약류관리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46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6조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약사법」 제69조 ○ 「약사법」 제71조 ○ 「약사법」 제73조 ○ 「약사법」 제74조 ○ 「약사법」 제76조의2 ○ 「약사법」 제81조 ○ 「약사법」 제98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구청장
식품안전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 가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4. 염 또는 함유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료관리법」 제25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 「사료관리법」 제27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 제30조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갱정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구청장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illegible]☐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 승강기법 제21조 ○ 승강기법 제28조	구청장
임대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 및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 「공동주택관리법」 69조1항	구청장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4조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 라 한 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 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 치 · 관리	○ 「도로법」 제31조	중부공원녹지 사업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 · 관리	○ 「도로법」 제31조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 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 이라 한다) 제36조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 공원녹지법 제38조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2조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구청장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연생태과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3조	구청장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1. 방제명령 등	○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시험림 관리(지정 · 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구청장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나. 지정서 교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다. 지정 취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0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물재생센터 소 장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3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 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 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 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 에 따르는 조치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 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5조 ○ 「하천법」 제15조 ○ 「하천법」 제14조 ○ 「하천법」 제52조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제33조 ○ 「하천법」 제36조 ○ 「하천법」 제38조 ○ 「하천법」 제68조 ○ 「하천법」 제69조 ○ 「하천법」 제7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어.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 「하천법」 제72조 ○ 「하천법」 제90조 ○ 「하천법」 제47조 ○ 「하천법」 제48조 ○ 「하천법」 제76조 ○ 「하천법」 제77조 ○ 「하천법」 제78조 ○ 「하천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 「하천법」 제91조 ○ 「하천법」 제98조 ○ 「하천법」 제2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67조 ○ 「하천법」 제46조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나.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3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소방서장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소방서장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소방시설법 제31조 ○ 소방시설법 제32조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 소방시설법 제3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구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신규 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금지 처분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행정주체로 권한 이관된 위임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항 및 법제명을 변경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2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단서)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3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투융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4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2조의2)

-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5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가”로, “운영하는데”를 “운영함에”로,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분)”을 “(여성관련시설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플라자:”를 “여성플라자: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 등”으로, “복지증진 등을 위한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을 “복지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공예센터 :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조제4호 중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발전센터 :”로, “교육·취업·창업지원”을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장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제3장제14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공간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기타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3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이용대상)”을 “(이용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여성플라자”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여성관련시설”을 삽입한다.

제6조의 제목 “(여성플라자의 명칭 등)”을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
2.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
3.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
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5.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제14조(중전의 제7조)제1항 전단 중 “여성플라자를”을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로, “이 장에서 “사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플라자의”를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시설의”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사용허가”로, “여성플라자의”를 “여성관련시설의”로, “줄”을 “정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16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사용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을 “여성관련시설 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플라자”를 “여성관련시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10조 앞에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사용허가”를 삽입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 :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여성공예센터 :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발전센터 :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의 직접적인 소요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중전의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8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을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

제7조(중전의 제11조)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여성발전센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시설이용”을 삽입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이하 이 장에서 “이용자”라 한다)”

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제20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을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센터”를 “여성관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이용조건”을 “이용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발전센터”를 “여성관련시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여성관련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사용료”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3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등)”을 “(이용료의 감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사용허가를 받은”을 “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사용료의”를 각각 “이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19조(중전의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사용료의”를 “이용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제2호”를 “제18조제1항제3호”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4조제2항 제1호”를 “제17조제2항제1호”로, “50”을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중전의 제27조) 중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17조 및 제27조”를 “제10조 및 제25조”로,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9조)제2항 중 “발급결정”을 “교부결정”으로, “뺄을”을 “할”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30조) 중 “이”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여성플라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서울여성공예센터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별표3를 별표4으로 하고 별표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별표4를 별표5으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길 23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별표5를 별표6으로 하고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길 23(명륜4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39-21(신계동)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0(상봉동)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용두동)

명 칭	위 치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8(미아동)
	2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수유동)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87(공릉동)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50(불광동)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대현동)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화곡동)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3(구로동)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영등포동6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9(사당동)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5(봉천동)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서초동)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34(가락동)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54(도선동)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0(둔촌동) 신성빌딩 4층
장래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길 34(등촌동), 투에프코트 빌딩 7층

별표6을 별표7으로 하고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여성플라자의 시설이용료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국제회의장 (전체)	360,000원 ~ 500,000원	1. 1회 단가로서, 1회란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 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아트홀	280,000원 ~ 400,000원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회의실	5,000원 ~ 5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이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 ~ 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 ~ 80,000원	
에어로빅	1개월	40,000원 ~ 60,000원	

3. 숙박(연수)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한실	40,000원 ~ 220,000원	1. 실별 정원에 따라 사용료 책정 2. 한실의 경우 정원에서 1명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추가
양실	40,000원 ~ 230,000원	

별표7을 별표6으로 하고 별표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서울여성공예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창업실	보증금	1실당	1,000,000원~ 2,000,000원	이용료 별도
	이용료	㎡당/1개월	5,000원~ 15,000원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 사용자 개별부담

별표8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 (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1명 1개월	15,000원~ 100,000원	시장이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해당 과정의 강사료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 수할 수 있음. 1. 직업교육: 100,000원 2. 생활문화: 50,000원
생활문화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보육실 이용료		1명 1개월	5,000원~ 10,000원	◦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자유이용료	1명 1회	2,500원~ 3,000원	
헬 스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30,000원	
시청각실		1시간	20,000원~ 40,000원	
창업보육지원시설	창업보육실	㎡당/1개월	1,000원~ 5,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 1개월	10,000원~ 30,000원	○ 보증금 500,000원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5.7.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여성관련시설 근거규정 변동함(안 제1조, 제10조, 제19조)
- 나. 여성관련시설 사용 및 이용의 개념 구분하여 신규 장을 편성하고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함 (안 제3장, 제4장)
- 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함(안 제6조, 별표5)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6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경제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나. '17.4.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7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지정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2조)
 - 나.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1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를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제도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교통소통 대책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기간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4조)
- 나.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시기를 구분함 (안 제4조)
- 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확대 변경함 (안 제8조)
- 라.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추가함 (안 제13조)
- 마.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공사단계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함 (안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0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전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5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37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40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 칙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장의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다.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마. 일부 규정의 삭제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7. 11. 19.로 하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장~제5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1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 직영기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중”을 “금융기관 중”으로 한다.

제3조 중 “금고 지정”을 “금고지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9명이상”을 “9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 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과반수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급이상”을 “3급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제출받기”를 “제출 받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변경시”를 “변경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고은행이”를 각각 “금고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상황 및 금고은행”을 “상황, 금고”로, “평가보고 등”을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요구가 있을 시”를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라. 정기에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다.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안 제17조).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2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직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를 “위원장 및”으로, “호선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아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구성기관 명칭 변경(제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15.1.28.)

나.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4조)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시 조례 제4조(위원장)에는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로 잡고자 함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정비 및 부칙에 경과 규정 신설

-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및 기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17년 12월)후 2018년 1월1일부터 시 조례 개정안 시행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5년단위”를 “5년 단위”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명”을 “15명”으로, “주관부서의 장”을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를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5조제5항 중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⑫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복지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유실·유기방지”를 “유실·유기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등록대행자”를 “등록대행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년 이상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물보호센터장”을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동물보호담당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로 하여금”을 “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수의로 하여금”을 “공수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중성화수술”을 각각 “중성화 수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을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 ④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구청장”을 “자치구”로,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를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로 한다.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선식별장치”를 “무선식별장치가”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성화수술”을 “중성화 수술”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경우 : 50퍼센트.”를 “경우: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을 개정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11항~제13항)
- 나.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다.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지정기한을 명시(안 제8조 제3항, 제5항)
- 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 징수 범위 명시(안 제16조)
- 마.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4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제7조제1항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축사사무소의”를 “건축사사무소로서”로 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1호 중 “영 제115조의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를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로,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45조제5항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별표 4 제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목 공동주택 부분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 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법령 적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대(안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개정)
- 나. 건축물 철거 공사 안전심의제도 도입(안제7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자문에 관한 사항 추가(안제7조제1항제1호 아목 및 제7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 라.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및 감경비율(안제45조제3항, 제4항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6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를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로 한다.

[별표 6] 사무위임의 내용 중 수입기관에 서울식물원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16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태료 부과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 같은 법률 제25조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별표 6] 사무위임규정에 신설 사업소를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별표 6] 사무위임 규정 중 수임기관에 신설 사업소(서울식물원)를 추가함(안 별표 6)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조성계획 입안 또는 변경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관리·운영(점용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안 제3조)

- 조례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를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로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 퇴직 또는 파견 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의장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과 파견 공무원의 복무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29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⑤ 법 제8조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9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 방침과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결산 등의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연구원의 설립,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해 시장 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다. 서울연구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 라. 서울연구원 예·결산 관련 규정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함(안 제8조).
- 마. 경영평가 실시근거와 시의회 통보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1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
 - 다.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⑤ 정기회의는 연 1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제13조(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제14조(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 자율준수제」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2. 청렴 담당자 지정 및 예산 확보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4.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5. 부패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제16조(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①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1. 상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진단·평가·점검 등 필요한 사항
 2. 하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 실시
- ② 제1항제2호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시장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 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청렴문화조성

제1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21조(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사업소 포함), 투자·출자·출연기관 각 부서마다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를 ‘청렴 서포터즈’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2.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추진
3.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보고
4.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등

③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에 우수한 성과를 낸 청렴 우수 ‘청렴 서포터즈’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수립을 위해서 「시민 청렴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신청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은 인·허가, 공사·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제24조(하정 청백리상) 시장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수상종류 및 인원) 하정 청백리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선정절차) ① 감사위원장은 실·국·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자체공적심의 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 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로 구성 한다. 내부위원은 감사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각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을 시상 한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한다.

제2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법령상 근거 미비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9조)

다.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규정(안 제15조)

라.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 규정(안 제2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치구와의 협력)”을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 함(안 제7조)
- 나.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3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도 명시하여 줄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4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
3.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자치구 협력 등)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8조 제1항)
 - 나.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18조제2항)
 - 다.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을 신설함(안 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5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

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단에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로서 지급하는 공익제보 보상금의 최고 지급한도액은 없으며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로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2항)
- 나. 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 및 보상대상 가액의 100분의 30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삽입(안 제11조 제3항 전단)
- 다. 개정된 보상금의 적용 시기는 조례 시행 후 신고·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추가(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6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를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을 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참여, 위원 위촉시 시의회 추천 삭제, 약어 명시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소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 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한다.(안 제2조제2항)
- 다. 시의원 위촉과정 중 시의회의 추천을 삭제한다.(안 제2조 제2항)
- 라. 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 내 및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으로 한다.(안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7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사업의”를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
4.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정책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해당기관에 분석평가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매년 시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34조 부터 제36조”를 “제35조 부터 제37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하고,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39조의2(종전의 제38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다음에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6장에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한다.

[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중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여 시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범위 확장(안 제12조)

나. 젠더자문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다. 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마.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9조의2)

바.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

사. 민간위탁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 마련(안 제4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8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5호).

나.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39호**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0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업의지도 없으면서 여러 군데 기술교육원을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거나, 일정과정의 기술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점과 폐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1호****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시 본청·사업소,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서울시 업무를 수탁 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신설(안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2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 “① 재단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 정수를 15명으로 수정하되,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구 수정 변경함(안 제1조).
- 나. 이사 정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 반영함(안 제7조).
- 다.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4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시작 1개월 전까지”를 “시작 전까지”로 하고, “또한 같다.”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복지재단이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시한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심의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결산서류’의 제출기한은 실무적 이행과 관련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5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로, “식품”을 “식품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식품”을 각각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 등)”)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식품기부”를 “식품등의 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으로”를 “식품등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부식품제공”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안 제2조 제1호, 안 제5조 등)

다. 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6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

(안 제4조제4항)

나.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7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하고,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의 연임 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12조)
-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3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중 자가차고지비 항목에 대한 지급방식을 구체화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나. 자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고 면적을 고려하여 공시 지가의 25/1000를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49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과 관련되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간 확충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현재 서울시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서울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예술인 및 후원인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패션·봉제자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기술력이 결합된 패션·봉제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을 포함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창조적 비전 및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1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 영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② 관람권 대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0.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1. 매월 넷째 주 일요일
2. 설날, 추석, 어린이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및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의 운영, 제17조 제1호 기본시설의 대관,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한다.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대관 등

제16조(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옥내·외 기타공간

제18조(대관허가 신청)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관허가 심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한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2조에 따른 관람시간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2. 부설주차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박물관별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 기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나.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의 범위, 신청, 심사, 대관허가의 제한, 대관료, 대관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같은”을 “『폐기물관리법』, 같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이상의”을 “2 이상의”으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중”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으로, “제3호 가목(2)의”을 “제3호가목(2)의”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중 “등,”을 “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9조, 안 제12조~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3호**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

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4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

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안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7호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민간에 권고) 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계약서 등에서 사용하는 갑을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라. 자치구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8호**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다.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 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 주 · 정차 단속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 · 하천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 그 밖의 공공시설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건립비용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규정의 체계성을 갖추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 시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59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 조 제목 중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며, 제1항 중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에 소요되

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중 “지원”을 “보조”로, “시교육비특별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 조 제목 중 “(교육지원금의 재원 등)”을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로,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을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를 “교육감 및 구청장”으로 하고,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의 조제목 “(지원신청)”을 “(보조금 신청)”으로 하고, 제1항 중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교육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조제목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여 본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교육지원에”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로,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사업별”을 “교육경비 보조사업별”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말한다.이하”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지원을”을 “교육경비 보조를”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육지원계획수립”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으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교육사무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여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교육경비의 보조’이므로,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안 제명)
- 나.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힘(안 제1조)
- 다.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 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마.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 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0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이루어지는 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생교류”를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하며, “농림수산물”을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 식재료”를 “우수한 식재료”로 하고,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유관기관”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하고,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먹거리”를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로 하며, 제9호(중전의 제8호) 중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수”를 “우수한”으로 하고,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경비”를 “경비에 대해 일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를 “우수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제4항제5호 중 “추천한 학부모”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3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3항(중전의 제2항)제5호 중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을 “도농상생을 실현하는”으로 하고,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하여”를 “위하여 구청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가 명확하도록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함(안 제3조).

다.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안 제6조, 제12조, 제18조).

라. 조·항·목의 순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제17조).

마.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추가함(안 제16조).

바. 구청장의 권한 침해 부분을 삭제함(안 제17조, 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1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시장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feed-back) 절차를 필수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하도록 함(안 제 3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적합하게”를 “맞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하고 “부여되도록”을 “주어지도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용사용하고자 하는”을 “전용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8조 제목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15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9항 중 “얻거나 계약 시”를 “받거나 계약한 때”로 한다.

제20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조례 제599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고구단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한 2016년 8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의2)
- 나. 2015년 8월 20일 개정 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규정 및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별표5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안 제2조~제5조, 제7조~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3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를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잠실야구장의”를 각각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육진흥 담당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하며,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고,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15. 7. 1. 서울시 직제개편 및 '16. 2. 26. 통합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 나.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액을 추가하고,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 다. 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관리담당자를 ‘체육정책과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변경함(안 제4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4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비상근이사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근이사와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의료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의료원 같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규정이 많이 있음
- 이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재산 또는 재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한편,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의료원의 주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나. 관계법령에 따른 서울의료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다. 서울의료원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 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1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5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

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 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심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자 제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밝힘(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가능 하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6호**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에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의 현황과악 및 통계
5.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제2조)
 - 나.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 제4조)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 라.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
 - 마.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죽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죽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와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제5항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
나.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6조)
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현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20조)
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피·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안 제21조 ~ 제3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8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제2항 중 “장소”를 “시설·장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중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를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첨부서류 사항을 간결화하고, 그 외 반복되는 자구를 축약 사용하는 등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조례의 목적을 합법화 취지에 맞도록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목적에 추가·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营业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재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69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이하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 1·2 부시장이 된다.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3.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4.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
5.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4.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10조 중 “성능개선위원회 회의”를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 전환 및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를 설치하여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나.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0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변경함(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1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0억원”을 “300억 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시설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7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1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등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3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주재하는”을 각각 “주관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하고자 하는”을 “제안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청취하고자 하는”을 “청취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개발하고자 하는”을 “개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 하고자 하는”을 “자문하려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8조의3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된”을 “위촉 해제된”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도시 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추가(안 제64조제2항제3호)

나.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44조제3항제1호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4호·제3항제2호”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를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로 한다.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안 제2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7.7.)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며,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입간판의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안 제9

조의2제1항제3호).

- 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정비함(안 제7조제5호).
- 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가로영상문화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 라.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중에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제23조제2항2호나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나.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된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조성 업무도 수행하며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임.
- 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676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하 “공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 공급계획”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급·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급계획”을 “공급·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급계획의 내용)”을 “(공급·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계획”을 “공급·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재원조달방안”을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공급을”을 “공급·관리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60m”를 “60제곱미터”로, “85m”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50m”를 “50제곱미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4항을 따른다.

제4장의 제목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9조제2항 규정”을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승인”을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제14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 규정”을 “법 제5조”로,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이상(”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행 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장이 이를”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16조제2항제10호”를 “제15조제2항제10호”로, “계산한다”를 “계산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 재적위원은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34조의 규정을”을 “법 제34조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와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 간 정합성을 유지코자 함.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등 개정

나. 기타 관련법의 제명과 용어 변경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내용 반영

- 관리사항 포함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 조정(4년→5년)(안 제6조, 제7조)

- 통합심의위원회 검토·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 추가 및 이 경우의 재적위원 계산법 명시(안 제14조, 제18조)

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법·개정된 내용 반영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와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내용 삭제(안 제2조, 안 제12조)
- 다. 그 밖에 관련법 제명과 용어 변경 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 m² → 제곱미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18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장·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민참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창업과”를 “문화융합경제과·신성장산업과·디지털창업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융합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을 “문화융합경제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8항제3호 중 “애니”를 “애니메이션”으로, “문화산업 지원”을 “문화산업 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5.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9.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중전의 제1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중전의 제1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서비스 전달 전달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제12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제16조제8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제17조의3제1항 중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국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영상, 영상기록물, 체전백서 등 발간 및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4.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6.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 전야제 및 문화예술 등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7. 성화 채화 및 봉송에 관한 사항
8. 종목별 경기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9. 입장권 제작 및 관리(관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시민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4.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 관련 중앙부처 협의, 해외 동포단 초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체전 관계자 숙박, 식·음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국내 외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9.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제7항제1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절을 제23절로 하고, 제132조부터 제138조까지를 각각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로 하며, 제22절(제132조 및 제1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절 서울기록원

제132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기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3.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개정
4. 이관·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5.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전자 및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시행
2.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4. 중요기록의 매체수록 및 장기 보존기술 연구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인사·예산·회계·복무 등 운영지원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제9호, 제17조의3 중 “전국체전기획과”, 제132조 및 제133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주요 시책 추진 전담기구 마련을 위한 부서 및 사업소 신설, 기능강화 필요 분야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요 시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정비

- ‘서울형 참여예산제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과 재편(안 제10조)
- 홍릉바이오 클러스터, G밸리 등 경제거점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 재편(안 제11조)
- 100주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안 제17조의3)
- 기록물 수집·보존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안 제132조, 제133조)

나. 현안 반영 소관업무 조정 및 유관 기관 변동사항 현행화 등

- 봉제산업 총괄기능 부여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업무 명확화(안 제11조, 문화융합경제과)
-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업무 부여(안 제12조, 복지정책과)
- 정부부처 변동 사항(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안전부 통합) 반영(안 제23조, 산지방재과)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182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7,771	4,100	300	7,932	5,289	150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9,909	3,931	294	401	5,133	150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서기관	92	70	6	6	9	1

같은 표 4급 직렬란 중 연구관(학예)또는서기관란 다음에 연구관(기록)또는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구관(기록)또는 서기관	1				1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272	802	44	53	345	28
행정	564	384	42	22	93	23
시설	176	105			70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공업란, 녹지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144	1,601	89	102	1,272	80
행정	1,155	743	67	39	253	53
세무	43	41	1			1

공업	323	94	6	4	217	2
녹지	60	28			32	
환경	40	21		13	6	
시설	495	253	1	2	222	17
행정또는시설	38	36			2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서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보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125	1,085	88	145	1,771	36
행정	1,113	541	62	57	428	25
세무	32	32				
사서	19		1	8	10	
전산	113	66	2	8	36	1
방호	29	7	2	4	16	
공업	387	23	5	12	345	2

녹지	80	11		2	67	
보건	19	17			2	
시설	449	161	1	4	277	6
방송통신	56	23	3	12	18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간호란, 시설란,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60	224	48	84	1,403	1
행정	214	34	15	15	150	
녹지	15				15	
간호	130				130	
시설	84	10			74	
사육운영	18				18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간호조무란, 농업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218	6	4	4	204	
행정	41	1	1	1	38	

녹지	5				5	
간호조무	31				31	
농업또는녹지	22				22	

같은 표 연구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58	16		186	156	

같은 표 연구관 소계란, 학예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소계	57	3		32	22	
학예연구	19	3			16	

같은 표 연구관 직렬란 중 학예연구관 다음에 기록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록연구	2				2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관, 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301	13		154	134	
학예연구	78	8		2	68	
기록연구	10	5			5	
공업연구	36				36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6,951	128		6,823		
소방사	3,668	8		3,66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신설 및 시정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등을 위해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 인력 보강 및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증원

- 소방·간호·아동보육 등 안전·복지 분야 인력 보강(+111명)
- 신규시설 건립,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현안시책 추진인력 보강(+57명)

나.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직급 조정 및 인력 이관

- 서울대공원 사육기능 강화 및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고도화를 위한 직렬 조정(6명)
- 서울로 기능보강, 하수도사업 기업회계 전환을 위한 직렬조정 및 인력이관(4명)

[시의회 규칙]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2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10일전까지”를 “15일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현행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다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제출된 의안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
 -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로 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30호****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로, “심사,”를 “심사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개하는”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으로,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개의견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장은”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청원인에 대한 통지)”를 “(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원인”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서울특별시의회 ----- ----- 심사와 -----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 소개의견서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 회의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1. ----- 지방자치단체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 ----- 청원인과 소개의원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이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이외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청원의 진행절차와 처리여부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이후 소개의원에게 그 처리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의 처리 절차상 소개의원에 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원의 진행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통보대상에 청원인 외에 소개의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5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강공원 주차장의 시민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명절 기간(3일간) 무료 개방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주차장의 명절기간 주차요금 징수 규정 개정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표 중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월 1일 및 2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부터 16일까지)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1, 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전화: 02)3780-0841, FAX: 02)3780-0745, E-mail : hyung3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53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 출연금액을 '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한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으로 변경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등 매년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인 기금 출연금액을 '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한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 2133-2682, 팩스 2133-1064, 이메일 sinaani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0호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명 칭 :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8.1.1. ~ 2018.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9,211원[7,530원(최저임금) × 122%] / 월급1,925,099원
 -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 위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5호

가락삼익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 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252(송파동 166번지) 가락삼익맨션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송파구 1구역(가락삼익맨션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송파동	166	6.2	210	50	-	2	공동	가락삼익맨션아파트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락삼익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가락삼익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로 252 (송파동 166번지)	-	증) 62,059	62,059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2,059	-	62,059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2,059	-	62,059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62,059	62,059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	증) 5,500	5,500	8.9	■ 순부담 면적 5,688.7㎡(9.2%) — 공 원 : 4,950㎡ — 사회복지시설 : 550㎡ — 건축물(부지환산) : 188.7㎡
	공 원	—	증) 4,950	4,950	8.0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	증) 550	550	0.9	
획 지	소 계	—	증) 56,559	56,559	91.1	
	공동주택	—	증) 56,559	56,559	91.1	공동주택용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	증) 4,950	4,950		조성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소공원	◦ 신설 - 면적 : 4,950㎡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공원 확보

2)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	증) 550	550		조성후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 신설 - 면적 : 550㎡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확보

- 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1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550	50%이하	250%이하	5층 이하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기 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계		-	-	5,760.30	
주민 공동 시설	계	1,000세대 이상 500㎡ + (총세대수 x 2㎡) x 1.25	4,750.00이상	4,940.00	
	경로당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500.00이상	550.00	
	어린이집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725.00이상	750.00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서울시 주택조례)	298.00이상	300.00	독서실(남,여), 문고 등
	주민공동시설	-	-	800.00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주민운동시설	-	-	700.00	2개소
	어린이놀이터	-	-	1,840.00	3개소
관리사무소		10㎡ + (총세대수-50) x 0.05㎡	90.00이상	120.00	입주자회의실 등
유치원		-	-	610.30	
경비실		-	-	90.00	3개소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500㎡ + 1,650 × 2㎡) × 1.25 = 4,750.0㎡ 이상 < 4,940.0㎡ : 적합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가락삼익맨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2,059.0	-	-	송파구 오금로 252 (송파동 166번지)	16	-	-	16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가락삼익 맨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2,059	획지1	56,559	송파동 166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7.46% 이하	292.82% 이하	해발고도 125m이하 /최고31층 이하	
			획지2 (사회 복지 시설)	550		어린이집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1,650	100.0		
			공동 주택	임대	60㎡이하	45㎡형	209	12.7			
				분양	60㎡이하	45㎡형	16	1.0			
						49㎡형	46	2.8			
						59㎡형	564	34.2			
					60~85㎡이하	84㎡형	641	38.8			
				85㎡초과	104㎡형	174	10.5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9.5%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7.46%)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2.8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획지 및 도로 연접	경계선에서 3m			개방감 확보 및 도로 · 보행환경 개선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비 고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등	
		62,059㎡	56,559㎡	5,5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토지 5,500㎡, 건축물(토지환산) 188.7㎡ 순부담 면적 : 5,688.7㎡(9.2%)			
개발가능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10% + 10% + 27.46% = 247.46%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지침
	허용 인센티브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 고	
		합 계	10%	최대 20%	
		녹색건축인증 1등급	4%	-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3%	-	
		신재생에너지이용 2등급	3%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1.3 × 0.10058) = 27.46%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5,688.7㎡ ÷ 56,559㎡ = 0.10058			
		건축물 기부채납 검토	■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국·공립어린이집(별도부지 + 건축물) - 부속토지 : 550㎡ / 연면적 : 1,000㎡ - 환산부지면적 : 188.7㎡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어린이집) × 연면적 ÷ 부지가액 = 2,660,000 × 1,000 ÷ 14,100,000 ※ 공사비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어린이집 공사비(800~1,000㎡) 적용 → 2,660,000원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7,050,000원 × 2 = 14,100,000원)		
정비계획용적률		247.46%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2.82%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			
소형주택건립용적률		22.68% 이상 (292.82% - 247.46%) × 0.5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자연지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배치 • 지형 고저차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제시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 유지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락삼익맨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현황 : 936세대 계획 : 1,650세대 (증) 714세대	

아.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획지1	56,559㎡	—	209세대	44.9㎡ : 209세대	지상층 연면적 12,853.5㎡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정비계획용적률		247.46%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2.82%			
재건축 소형 주택	용적률 증가분(%)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 292.82 - 247.46 = 45.36$			
	건립용적률(%)	$45.36 \times 0.5 = 22.68$			
	의무 연면적 (지상층)	$56,559.0 \times 22.68\% = 12,827.58\text{㎡ 이상}$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비고
		44.92 / 61.50	209	12,853.50 (22.73%)	지상층 의무연면적 : 12,827.58㎡

4.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2017년 07월 06일)

[조건사항]

- 향후 건축심의회 건축배치계획은 양재대로변 및 오금로변 적정 가로경관 확보, 차폐감 최소화,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게 조정할 것.
- 화재 등 비상시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상부의 단지내 도로를 연장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분기 계획할 것.
- 양재대로변 완충녹지의 공공성 있는 이용 및 개방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42) 및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02-2147-2896)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7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7호(2017.6.29.)로 고시된 「강일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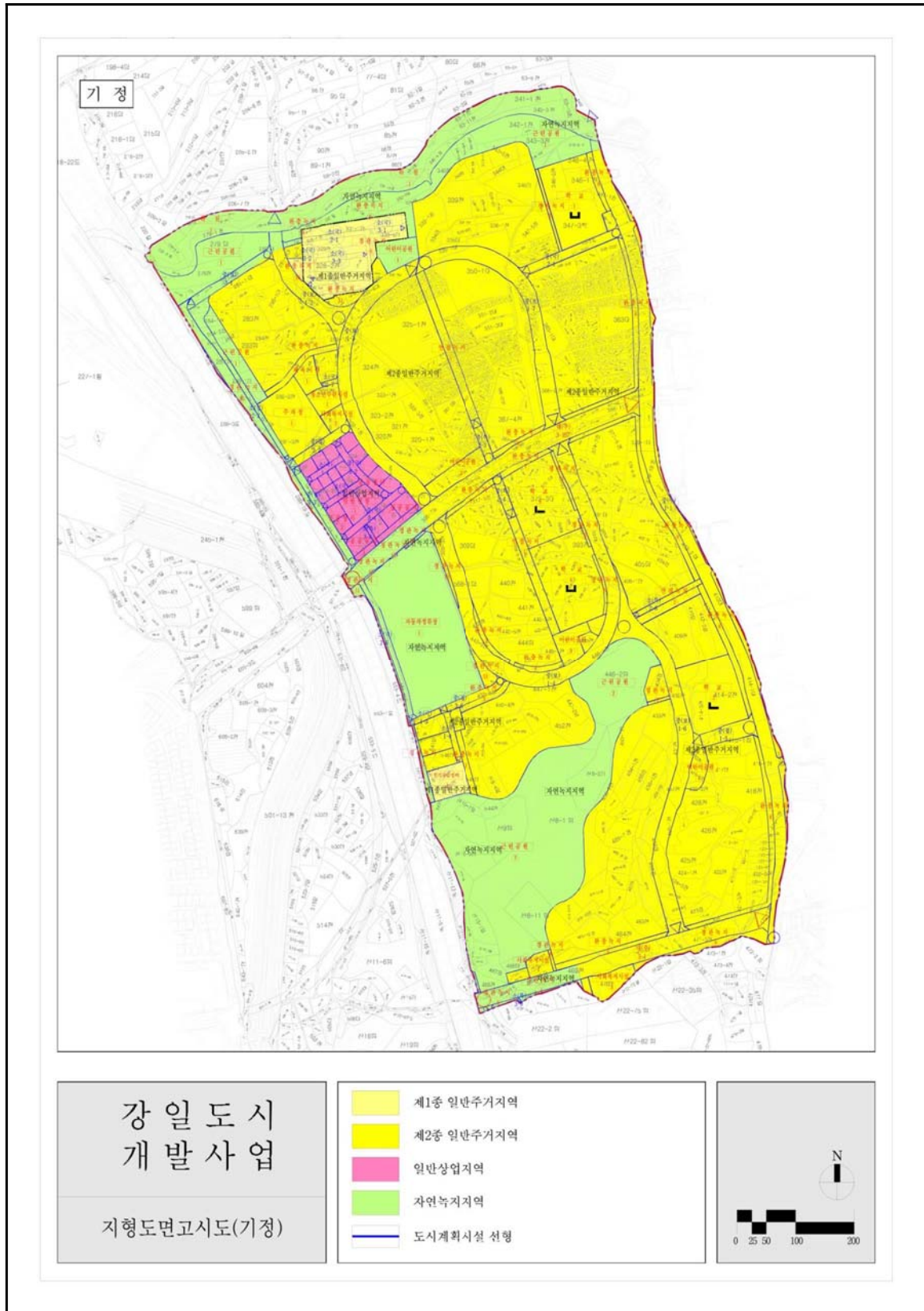
1.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 게재생략
2. 강일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 게재생략
3. 강일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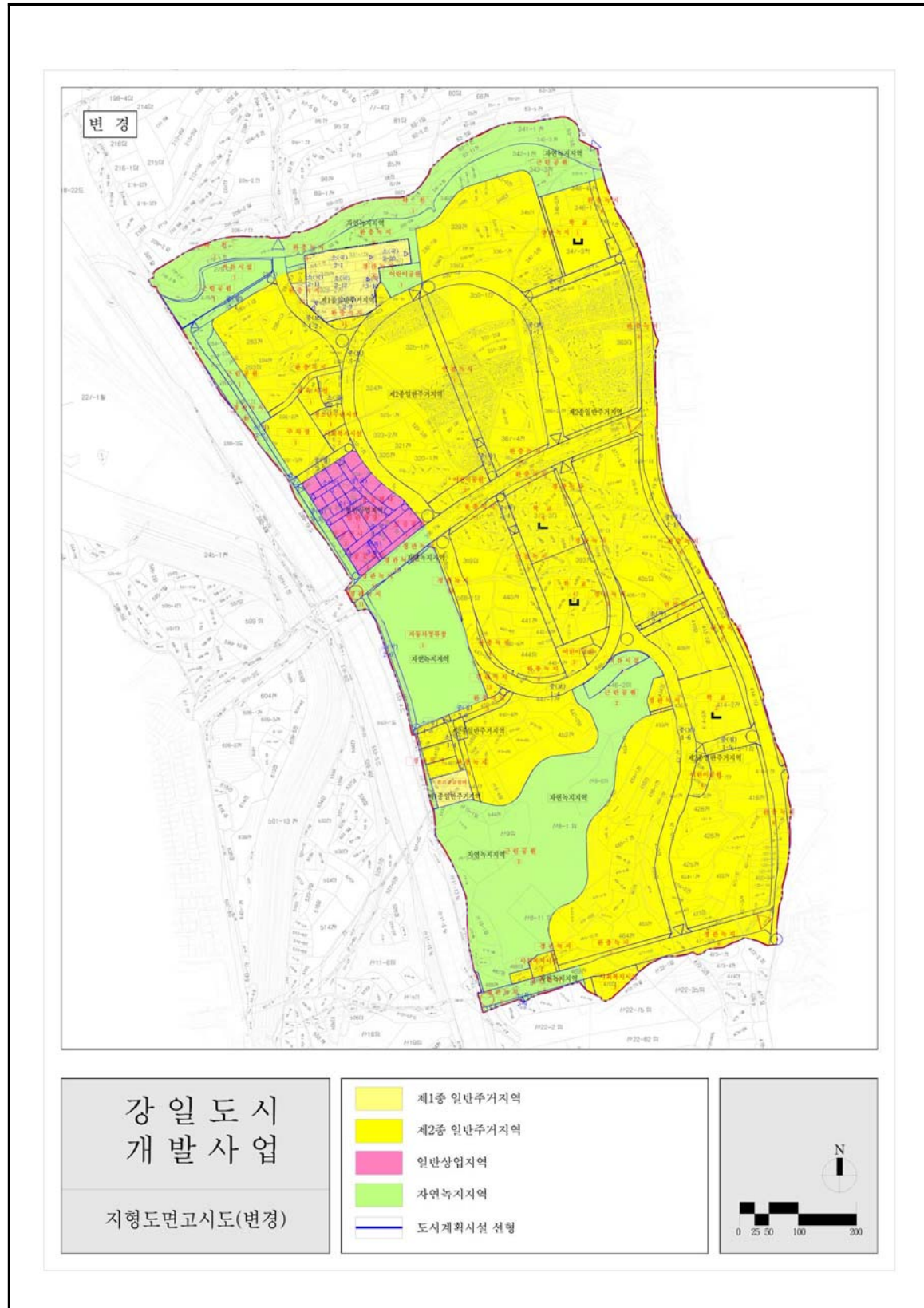
○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47,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24,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02)3410-759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결정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4.1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호(2014.01.09.)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성북구 정릉동 861-1일대 국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관한 사항으로, 성북구 정릉동 861-1 일대 국민대학교의 부족한 교지 및 교사확충을 위하여 1,2캠퍼스 추가편입 및 4캠퍼스 신설 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학교	대학 (국민대학교)	합 계	202,127	증) 3,547	205,674	-	-
			제1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861-1일대	166,401	증) 1,342	167,743	서고196 (’74.12.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제2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855-2일대	5,178	증) 813	5,991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3캠퍼스 종로구 평창동 147-2일대	30,548	-	30,548	서고367 (’15.11.19)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4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711-1일대	-	증) 1,392	1,39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학 (국민 대학교)	• 면적변경(전체) : 증) 3,547m² - 제1캠퍼스 면적변경 : 증) 1,342m² - 제2캠퍼스 면적변경 : 증) 813m² - 제4캠퍼스 신규편입 : 증) 1,392m²	• 부족한 교지 및 교사확충을 위하여 제1,2캠퍼스 추가 편입 및 제4캠퍼스 신설을 통한 학생 교육환경 개선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구역계획

캠퍼스	구 분	명 칭	연 번	면 적 (m2)	비 고
제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	①	51,484	경상대학 / 법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②	8,182	기숙사
			③	19,766	공과대학 / 도서관
			④	30,941	예술·체육·과학기술대학 / 복지시설
		소 계			110,373
	유지	외부활동	⑤	18,606	대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보전	녹지보전	⑥	38,764	배후녹지
	계			167,743	
제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	⑦	2,226	보육시설
	유지	상징경관	⑧	2,159	명원민속관
	보전	녹지보전	⑨	1,606	내부녹지
	계			5,991	
제3캠퍼스	관리	일반관리	—	10,498	서고시 제2015-367호 (2015.11.19.) 세부조성계획 완료
	보전	녹지보전	—	20,050	
	계			30,548	
제4캠퍼스	관리	일반관리	⑩	1,392	기숙사
	계			1,392	
합 계				205,674	

(2) 밀도계획(건폐율)

캠퍼스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	사용건폐율 (%)	관리건폐율 (%)
제1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3,603	60.0	12.1	2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21,115	30.0	29.5	30.0
	계	164,718	38.0	24.9	30.0
제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5,991	30.0	8.8	30.0
제3캠퍼스	제1종전용주거지역	22,692	50.0	14.96	15.58
	제2종일반주거지역	4,246	60.0		
	계	26,938	51.57		
제4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2	60.0	41.1	50.0
합 계		199,039	39.7	23.2	28.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캠퍼스	구역 구분	용적률(%)				관리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제1캠퍼스	①	150.0	149.65	—	150.0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②	150.0	139.24	—	140.0		
	③	150.0	207.10	60.0	210.0		
	④	150.0	123.72	—	150.0		
	⑤	150.0	0.27	—	5.0	- 지표로부터 최대 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⑥	150.0	—	—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전구역
제2캠퍼스	⑦	150.0	9.19	—	80.0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서울시지정 민속문화재 주변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일반관리구역
	⑧	150.0	18.65	—	20.0	- 지표로부터 최대 8m 이하	상징경관구역
	⑨	150.0	—	—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전구역
제3캠퍼스	—	126.0	95.39	—	100.0	- 128m(해발고도) 이하	일반관리구역
	—	10.9	—	—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녹지보전구역
제4캠퍼스	⑩	150.0	149.85	—	150.0	-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일반관리구역

※구역별 높이계획 : 고시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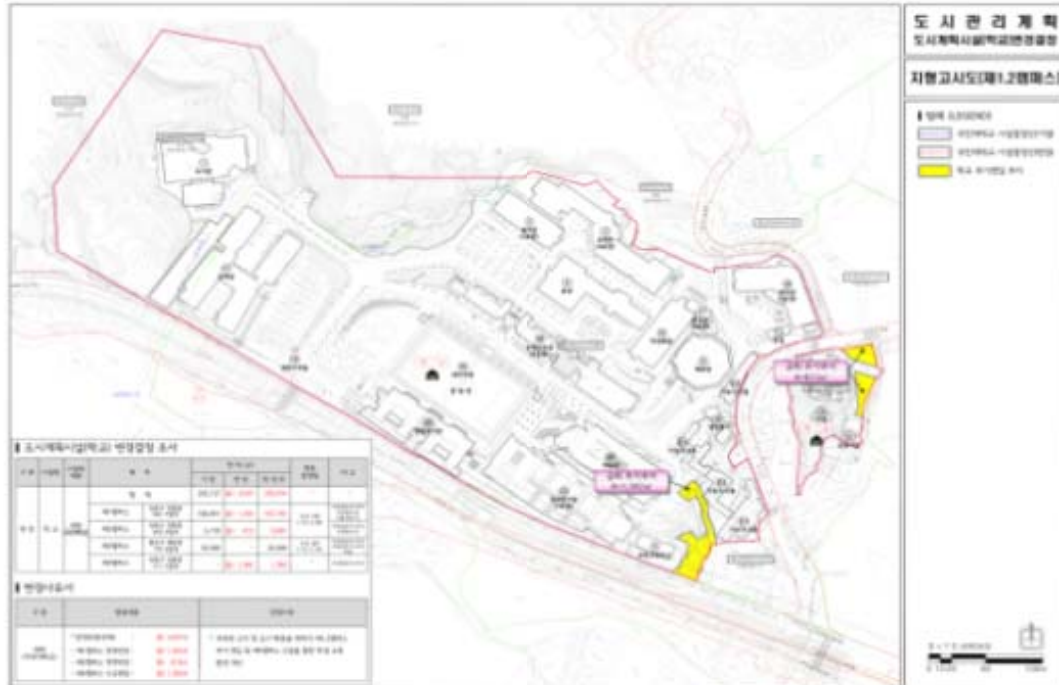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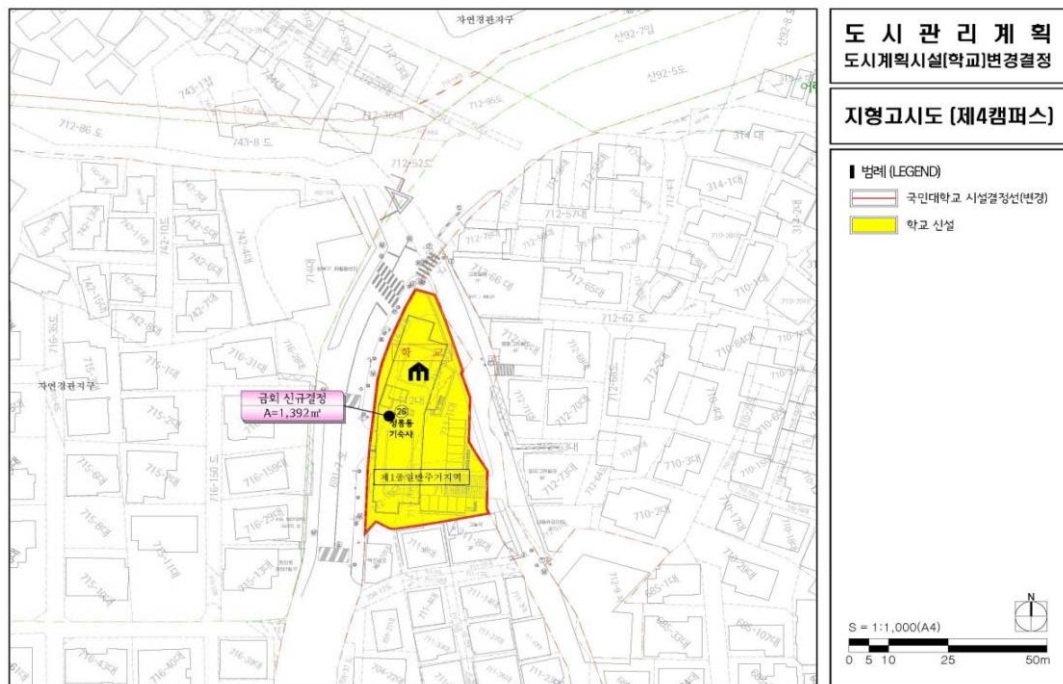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2) 및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전화 2241-2763)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도(제1,2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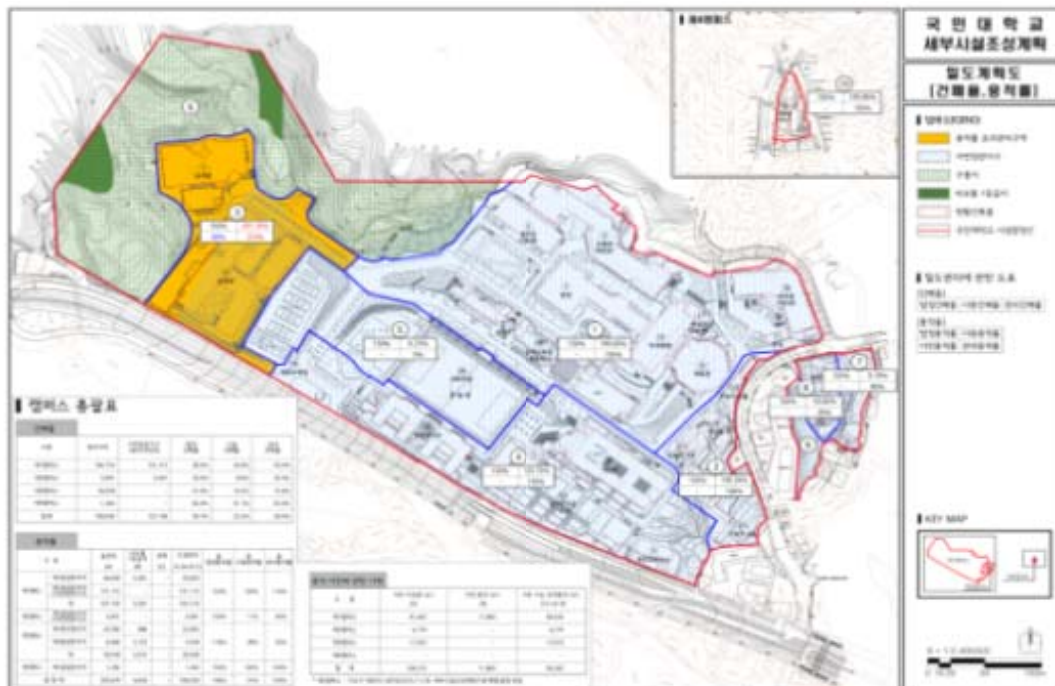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도(제4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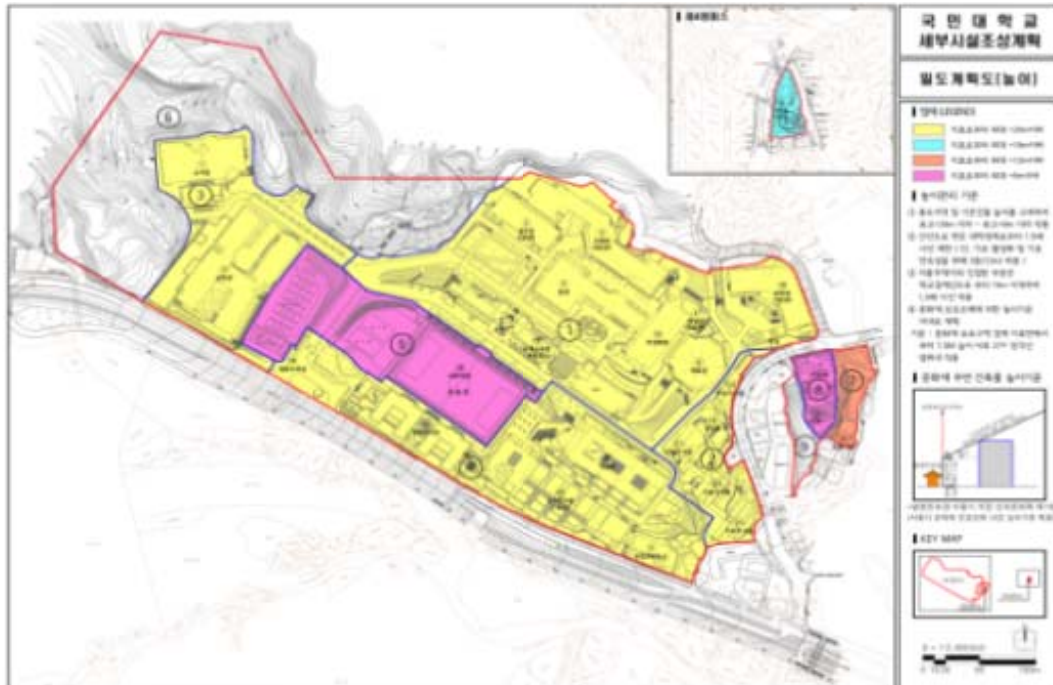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36-2 ~ 만리동1가 62 일대
- 규 모 :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역고가도로) : 폭 10.3m, 연장 810m
 -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폭 8.6m ~ 10.3m, 연장 214m
 -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 10,353.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토지조서(생략)
- 물건조서(무상귀속)

연번	주소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개발행위자(행정청)		비고
						성명	주소	
1	중구 봉래동2가 122-17	서울역전파출소	62.04	143.22	지하1층 지상2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철거

연번	주소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관리청		비고
						성명	주소	
1	공사완료 후 신규지번 부여	서울역파출소	134.70	361.15	지하1층 지상3층	경찰청	서대문구 통일로 97	신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하여 기존 파출소는 서울특별시, 신축 파출소는 경찰청에 각각 무상귀속됨

바.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변경)

- 건축허가 의제 건축물 현황

연번	구분	명칭	용도	구조	건축개요				비고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1	변경없음	서울로 관리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층 지하1층	6.91m	405.94㎡	478.96㎡	
2	변경없음	도토리 풀빵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3.78m	9.08㎡	9.08㎡	
3	변경없음	서울로 여행자가페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7.30m	119.79㎡	229.72㎡	
4	변경없음	서울로 안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05m	13.53㎡	13.53㎡	

연번	구분	명칭	용도	구조	건축개요				비고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5	변경없음	서울로 가게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05m	13.53㎡	13.53㎡	
6	변경없음	수국 식빵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5.00m	42.50㎡	42.50㎡	
7	변경없음	목련 다방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55m	16.12㎡	16.12㎡	
8	변경없음	서울로 전시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55m	16.12㎡	16.12㎡	
9	기정	장미 김밥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5.00m	41.84㎡	41.84㎡	
	변경	장미 빙수							
10	변경없음	정원 교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1층	4.65m	16.12㎡	16.12㎡	
11	변경없음	7017 서울화반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4.40m	119.79㎡	119.79㎡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관련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서울로운영단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로운영반(☎ 02-2133-449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0호**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I.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 면 적 : 5,790.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7년 9월 18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시행자 명칭 : 주식회사 선우
- 대표자 성명 : 정 문 희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대청동)
- 법인등록번호 : 195511-015750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강서구 화곡동	1013	3	대	5,142.7	주식회사 선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	1/1	주식회사 경남은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지상권설정 목적 :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 정중앙 1,227.8㎡ 존속기간 : 설정등기일부 터 30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20,400,000,000원
									주식회사 푸른상호 저축은행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잠원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2,600,000,000원
2			15	도	29.4			1/1	주식회사 비엔케이 저축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 2-4층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676,000,000원 토지 화곡동 1013-15,16 건물 1013-16 공동담보
3			16	대	200.7			1/1			
4			10	대	351.9	주식회사 선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	120.99/ 351.9			
						정문희	제주도 제주시 고마장4길 9(건입동)	32.29/ 351.9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63,800,000원
						김윤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19동 104호	24.72/ 351.9			
						문광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10 상우빌라 303호	32.29/ 351.9			
						정지윤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9길 42, 612동 1104호(신내아파트)	32.09/ 351.9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63,800,000원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박정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10 상우빌라 402호	24.72/ 351.9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41,050,000원
						엄기성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가길 45-4, 403호	32.29/3 51.9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13,200,000원
						송유나	제주도 제주시 기와4길 48-1, 106동 303호	24.72/3 51.9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32,600,000원
						이창동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39-11, 105동 101호	27.79/3 51.9			
5			12	도	65.6	유한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72-4	1/3	서울시		압류
						박병용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23-3	1/3	서울시		압류
						유사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550-2	1/3	서울시		압류
계					5,790.3						

※ 1013-8, 1013-9번지는 1013-3번지로 합병(2017-04-14)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행정동	본번	부번												
1	강서구 화곡동	1013	3	대	근생, 교회	철근 콘크리트조	1978.09.13	1,725.28	1	3	주식회사 선우				
2			9	대	근생, 단독	연와조	1981.11.02	171.9	1	2	주식회사 선우				
3			10	대	다세대	철근 콘크리트조	2002.07.12	657.88	-	5	주식회사 선우 외8인				
4			16	대	단독	연와조	1982.09.24	158.02	1	2	주식회사 선우	주식회사 비엔케이 저축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 2-4층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676,000,000원 토지 화곡동 1013-15,16 건물 1013-16 공동담보	
계								2,713.08							

※ 1013-8, 1013-9번지는 1013-3번지로 합병(2017-04-1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5,790.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5,790.3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 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7. 관계 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4)와 강서구청 5층 주택과(02-2600-6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 면 적 : 5,790.3㎡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시행자 명칭 : 주식회사 선우
- 대표자 성명 : 정 문 희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대청동)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19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5,790.3	100.0	임대주택용지
합 계	5,790.3	100.0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680인
- 2) 주택건설계획 : 42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17 형	47	11.0	47	6.9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3A 형	40	9.3	40	5.9	
	소 계	87	20.3	87	12.8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7 형	18	4.2	18	2.7	
	23A 형	142	33.1	142	20.9	
	23B 형	13	3.0	13	1.9	
	43A 형	13	3.0	39	5.7	
	43B 형	65	15.2	173	25.5	
		65	15.2	130	19.1	
	43C 형	13	3.0	39	5.7	
	43D 형	13	3.0	39	5.7	
	소 계	342	79.7	593	87.2	
합 계		429	100.0	680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업무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 863.93㎡	강서구에 기부채납
신설	공공업무시설	청년커뮤니티시설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 608.40㎡	서울시에 기부채납

※ 주민커뮤니티시설(강서구에 기부채납) 및 청년커뮤니티시설(서울시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지 내 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도·광장 등의 포장면은 지양하며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생태 면적을 최대 확보, 비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 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 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 저감계획

가) 탄소 흡수림 조성

- 사업지의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구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강서 화곡 기업형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5,790.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 정 사 유
-	강서 화곡 기업형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5,790.3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90.3	-	5,790.3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790.3	감) 5,745.3	45.0	0.8
	준주거지역	-	증) 5,745.3	5,745.3	99.2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745.3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업무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 863.93㎡	강서구에 기부채납
신설	공공업무시설	청년커뮤니티시설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 608.40㎡	서울시에 기부채납

※ 주민커뮤니티시설(강서구에 기부채납) 및 청년커뮤니티시설(서울시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다)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신설

구 분	구역명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강서 화곡 기업형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1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5,790.3	-	5,790.3	

(2)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신설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단, 지하1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고시원,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관련법에 따른 불허용도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기 준	결 정	비 고
건폐율	· 준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9.92% 이하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용적률	· 기본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준주거지역 : 400%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기본용적률 : 398.83% 이하 · 상한용적률 : 463.16% 이하	– 기본용적률 :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높 이	· 50m 이하	· 50m 이하	– 「공항시설법」에 의한 최고높이 (해발 70.43m) 이하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내 용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포함)	· 기본 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 준주거지역 : 400%이하 · 가중평균 : 398.83% 이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 기준	비주거 비율	· 제한없음(지상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 정 사 유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지정용도로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주거환경 저해용도 도입을 불허함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결 정 내 용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구역경계로부터 3m 이격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	·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대상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6m) 조성 ·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대상지 남측에 공공보행통로(3m) 조성
차량 진 · 출입 불허구간	· 대상지 동측 강서로변 차량 진 · 출입 불허구간 지정 · 강서로 41길 : 강서로로부터 10m

바) 공공기여계획

구분	건축연면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면적(㎡)	비고주)
공공임대주택	3,912.93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613.53	10.60%
공공업무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863.93	공공업무시설 및 부속토지	375.00	6.48%
공공업무시설 (청년커뮤니티시설)	608.40	공공업무시설 및 부속토지	264.08	4.56%

주) 전체 구역면적(5,790.3㎡)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내수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사면재해

- 지하굴토 공사 시 토압의 증대,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I.P 공법으로 흙막이를 실시토록 계획
- 공사 시 제거식 앵커 및 STRUT(RAKER)공법을 적용하여 단계별 굴착 계획

3) 지반 및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강서구 화곡동	1013	3대	5,142.7	주식회사 선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	1/1	주식회사 경남은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지상권설정 목적 :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의 소유권 범위 : 정중앙 1,227.8㎡ 존속기간 : 설정등기일 부터 30년
2			15도	29.4			1/1	주식회사 푸른상호 저축은행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잠원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20,400,000,000원
3			16대	200.7			1/1	주식회사 비엔케이 저축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 2-4층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2,600,000,000원
4			10대	351.9	주식회사 선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	120.99/ 351.9			
					정문희	제주도 제주시 고마장4길 9(건입동)	32.29/ 351.9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63,800,000원
					김윤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19동 104호	24.72/ 351.9			
					문광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10 상우빌라 303호	32.29/ 351.9			
					정지윤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9길 42, 612동 1104호(신내아파트)	32.09/ 351.9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63,800,000원
					박정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10 상우빌라 402호	24.72/ 351.9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41,050,000원
					엄기성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가길 45-4, 403호	32.29/ 351.9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213,200,000원
					송유나	제주도 제주시 기와4길 48-1, 106동 303호	24.72/ 351.9	한화생명모 협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132,600,000원
					이창동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39-11, 105동 101호	27.79/ 351.9			
5			12도	65.6	유한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72-4	1/3	서울시	압류	
	박병용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23-3			1/3	서울시	압류			
	유사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550-2			1/3	서울시	압류			
계				5,790.3						

※ 1013-8, 1013-9번지는 1013-3번지로 합병(2017-04-14)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본번	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강서구 화곡동	1013	3	대	근생, 교회	철근 콘크리트조	1978.09.13	1,725.28	1	3	주식회사 선우				
2			9	대	근생, 단독	연와조	1981.11.02	171.9	1	2	주식회사 선우				
3			10	대	다세대	철근 콘크리트조	2002.07.12	657.88	-	5	주식회사 선우 외8인				
4			16	대	단독	연와조	1982.09.24	158.02	1	2	주식회사 선우	주식회사 비엔케이 저축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 2-4층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676,000,000원 토지 화곡동 1013-15,16 건물 1013-16 공동담보	
계								2,713.08							

※ 1013-8, 1013-9번지는 1013-3번지로 합병(2017-04-14)

3) 토지취득 방법 : 구역면적의 94.9%를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부지는 협의 및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공공업무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청년커뮤니티시설)	강서구 화곡동 1013-3 일대	건축연면적 : 1,472.33㎡	- 위치 : 지상2층 일부

가)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강서구 및 서울시)에 시설 및 토지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강서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지	공급시기	비 고
	면적(㎡)	구성비(%)			
합 계	5,790.3	100.0	-	-	-
주택건설용지	5,790.3	100.0	자체사용	승인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강서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주식회사 선우(대표자 : 정 문 회)
 - 나. 주 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반룡로 63, 상가동 101호(대청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19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 일대
 - 나. 대지면적 : 5,790.3㎡
 - 다. 건 폐 율: 59.65% (건축면적: 3,453.63㎡)
 - 라. 용 적 륜 : 421.56%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4,409.44㎡)
 - 마. 용도 : 공동주택 429세대[공공임대(행복주택) 87세대/기업형임대(뉴스테이) 342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 바. 규 모 : 1개동, 지하3층/지상15층, 연면적 36,505.38㎡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6. 기타사항
 -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1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로이드인증원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유상근(1958. 2.28.)
3. 영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7층
(여의도동, 신송빌딩)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4호
6. 등록일자 : 2017. 9. 8.
7. 전화번호 : 02-736-62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1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753	2017.8.1.	마스트아이엔씨(주) 전병호 110111-6423985	서울 중구 명동2길 34, 9층 (충무로1가, 케이티중앙사옥)
2	202754	2017.8.1.	쥬엔시스템즈 나성현 110111-4798851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5길 10, 402, 3호 (성수동2가, 지영프라자)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3	202755	2017.8.4.	(주)다나와컴퓨터 고철현 110111-5112414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43, 201호 (양평동3가, 양평동우림이비지센타)
4	202756	2017.8.4.	(주)에스비엠 정한철 110111-6427276	서울 동작구 사당로13길 31, 관리동 3층 (사당동, 두산위브트레지움)
5	202757	2017.8.8.	성안전력(주) 이우현 284311-0017137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92, 2층(수유동)
6	202758	2017.8.8.	현대계장공업(주) 박종성 110111-0192578	서울 마포구 성산로 154(성산동)
7	202759	2017.8.16.	(주)이룸시스 박준호 110111-4721597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제22층 제 비-2206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8	202760	2017.8.16.	(주)에코넷시스템 이향구 284411-0052149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10층 (여의도동, 금강빌딩)
9	202761	2017.8.16.	(주)에스비정보기술 박태상 110111-5428192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5층 알556호(여의도동, 극동브이아이피빌딩)
10	202762	2017.8.16.	(주)크루메이트 이호철 110111-3302083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45, 3층 (도곡동)
11	202763	2017.8.21.	(주)에이치투아이티 이희제 110111-6226371	서울 금천구 범안로 1206, 501호 (독산동, 협진빌딩)
12	202764	2017.8.21.	(주)더맨 전상직, 장용수 110111 1623043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12층 (인사동, 태화빌딩)
13	202765	2017.8.21.	데이터링크시스템스(주) 김석한 110111-199257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1306호 (구로동, 마리오타워)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4	202766	2017.8.21.	(주)인젠트 정성기 110111-203173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대림동)
15	202767	2017.8.23.	(주)디에이치네트웍스 여인수 110111-367512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비동 806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6	202768	2017.8.23.	(주)유니드인포 노상욱 110111-31701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1209호(마포동)
17	202769	2017.8.24.	(주)진중 최재만 110111-6219871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5층 505호 (삼성동, 천마빌딩)
18	202770	2017.8.24.	(주)멕스 신용근 110111-5086007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3길 8, 104동 비 1104호(한강로2가, 벽산메가트리움)
19	202771	2017.8.25.	디와이아이앤씨(주) 주인웅 110111-634259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614호 (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20	202772	2017.8.25.	(주)에이티앤에스 최기주 110111-596464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417호 (적선동, 광화문플래티넘)
21	202773	2017.8.28.	뉴아이텍(주) 오경식 174611-0021622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6, 1013호 (방이동, 현대토픽스)
22	202774	2017.8.29.	(주)시너젠 윤금란 110111-4243640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7길 7, 908호 (성수동2가, 한라시그마밸리2차)
23	202780	2017.8.30.	(주)피폴리 이민재 110111 6092186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87, 2층 (동교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2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201735	주위켄시스 조대현	소재지: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0, 610호(가산동) 우편물:금천구 독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a동 405-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효력상실)	등록취소 청문통지서 2017.09.29. (10:00~12:00)
2	111467	주디알씨넷 엄준우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10, 4층 (북가좌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효력상실)	등록취소 청문통지서 2017.09.29. (10:00~12:0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26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해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대 상 시 설			지정(해제)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식물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16	서울시장	주요구조체 보수보강 완료	C	- 안전점검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2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
2017-91	(사)한국금융학회 (대표 : 박영석)	서울시 마포구 도화4길 82	- 금융분야의 학문연구 및 금융 정책의 현안과제의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60 (현금)	전국	'17.9.13~ '18.6.30
						'17.9.13 ~ '18.12.31
2017-92	군인권센터 (대표 : 임태훈)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2 나길 26	- 성소수자 군인 인권 침해 피 해자 지원	80 (현금)	전국	'17.9.13 ~ '17.11.30
						'17.9.13 ~ '17.12.31
2017-93	(사)청소년과가족의 좋은친구들 (대표 : 김태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	- 경계선 청소년, 청년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지원	100 (현금및물품)	전국	'17.9.13 ~ '17.12.31
						'17.9.13 ~ '18.12.31
2016-93 -1	(재)연평재단 (대표 : 김학순)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20길 48	- 군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한 행사 및 전사자 유가 족 생존장병 지원	100 (현금및물품)	전국	'16.9.23 ~ '17.9.22
						'16.9.23 ~ '17.9.22 ('16.9.23 ~ '18.9.22)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 경)
2017-21 -1	(재)대한정신건강 재단 (대표 : 정한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 대국민정신건강증진 및 연구 지원 등	215 (현금) (325)	전국	'17.2.14~ '17.12.31
						'17.2.14 ~ '17.12.31
2017-71 -1	(사회복지)열매 나눔재단 (대표 : 이장호)	서울시 중구 퇴계로20길 37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쪽방촌 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립지원	47 (현금) (58)	전국	'17.7.18 ~ '17.12.31
						'17.7.18 ~ '18.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31호

2017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매·설치 공고

- 서울특별시에서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등에 대한 운행제한을 위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2017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매설치

나. 시행자 :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CCTV 설치 예정지점 : 따로붙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담당자 이동선 ☎ 02-2133-36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17 단속시스템 설치예정지별 현장사진, 위치도

1. 분당-수서고속도로 (분당 → 송파구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2. 안양천로 (구로구 → 양천구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3. 지방도 309 (예술의전당 교차로 → 서초3동 사거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5차로
- 설치 타입 : 4차로 측주식 구조물
- 지방도 309호선 터널 진출 1,2,3차로 차량만 단속

4. 별말로 (부천 → 김포/올림픽대로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2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5. 서오릉로 (고양시 → 은평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6. 호암로_호암1터널 (안양시 만안구 → 금천구 시흥동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2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7. 분당내곡로 (내곡터널 → 내곡IC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 중앙부 녹지 설치 (향후 유지관리 안전지대 확보)

8. 밤고개로 (세곡3교 → 세곡동사거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4차로
 - 설치 타입 : 4차로 측주식 구조물

9. 양재IC (관교JC → 양재IC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 설치 타입 : 4차로 측주식 구조물

10. 강일 IC (암사IC → 강일IC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4차로
 - 설치 타입 : 기존 경찰청 문형식 시설물 활용

11. 석수역_시흥대로 (만안구 → 금천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5차로 (버스전용차로 포함)
 - 설치 타입 : 4차로 측주식 구조물

12. 서하남IC_강동대로 (서하남IC입구 교차로 → 둔촌사거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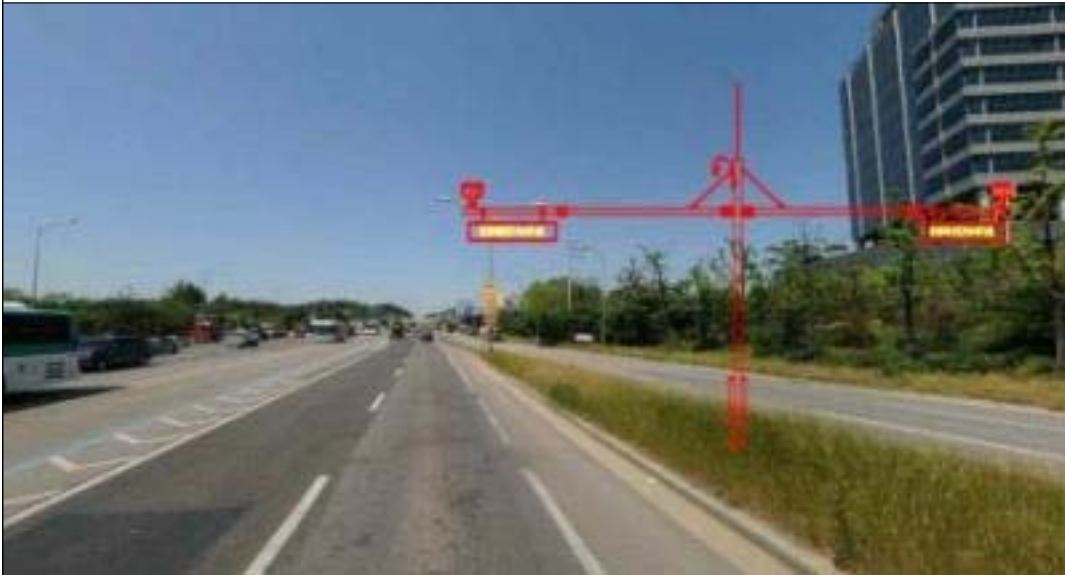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5차로
 - 설치 타입 : 5차로 문형식 구조물

13. 상일IC_천호대로 (상일IC → 강동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3차로
 - 설치 타입 : 양방향 측주식 구조물

14. 개화역_개화로 (고촌IC → 개화사거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5차로
- 설치 타입 : 기존 강서경찰서 문형식 시설물 활용

15. 덕은교_월드컵 북로 (덕은교 교차로 → 수색교 교차로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16. 도봉로 시계 (의정부시 → 도봉산역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4차로
- 설치 타입 : 4차로 측주식 구조물

17. 남태령고개_사당IC (남태령역 → 사당역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1차로
- 설치 타입 : 양방향 측주식 구조물

18. 화곡로 입구_화곡로 (오정대로 삼거리 → 화곡로입구 교차로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19. 망우리고개_망우로 (구리시 → 망우사거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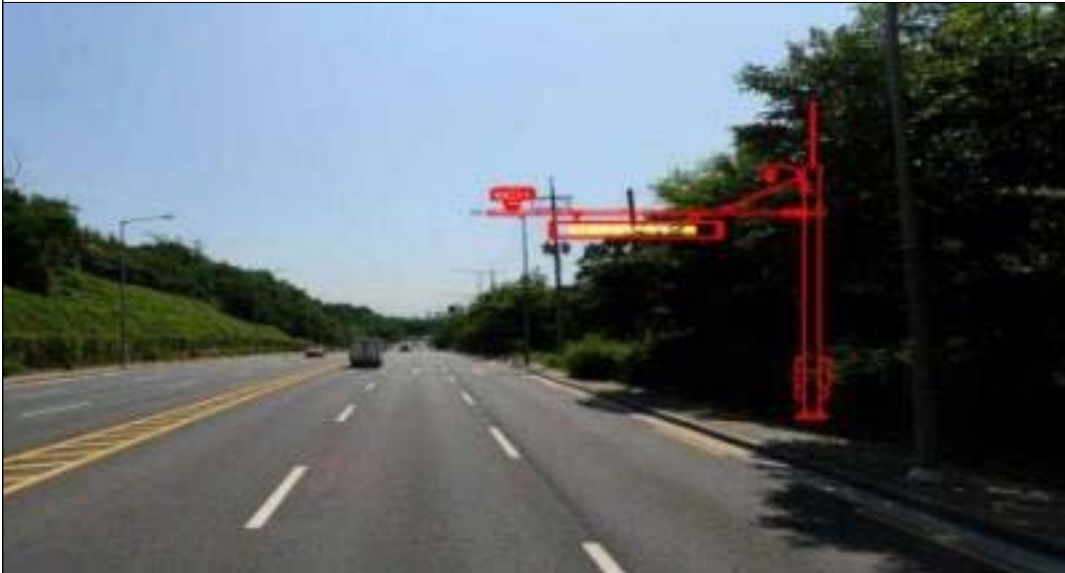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20. 작동터널_길주로 (까치울역 → 궁동삼거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21. 유한공고_경인로 (부천시 → 구로구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 설치 타입 : 2차로 측주식 구조물

2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IC → 올림픽대로JC 방향)



현장 사진



현장 위치

- 현장 사항
 - 차로 : 일반차선 4차로(갓길1차로 포함)
 - 설치 타입 : 4차로 측주식 구조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3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한국체육대학교)

1. 건설부고시 제326호(1984.8.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9호(2010.3.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1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3, fax : 2133-0739)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2991, fax : 2147-3879)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 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을 수립 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111,902.3	-	111,902.3	'84.8.25. (건고시 제326호)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관리(5개로 결정) (건축,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건물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구역별 높이 · 밀도 결정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 용적률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2호('17. 8. 31.)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된 종로구 창신동 23-322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7),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2663)에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 급수부장,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4층, 전화: 3146-1417, FAX: 3146-1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위치: 종로구 창신동 23-32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다. 사업의 명칭: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라. 사업 규모: 배수지 건설 5,600㎡

마. 면 적: 4,317㎡

바.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17. 10. ~ 2019. 1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따로붙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 성명: 따로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용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계		5필지		4,317			
1	종로구 창신동	산6-13	임야	1,380.0	서울특별시		
2	종로구 창신동	23-322	대지	2,011.2	"		
3	종로구 창신동	23-320	대지	575.3	"		
4	종로구 창신동	23-323	대지	14.2	"		
5	종로구 창신동	23-313	대지	336.3	"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124호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4호(2005.08.25.)로 결정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묘동 200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8.31.)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종로구청장

1.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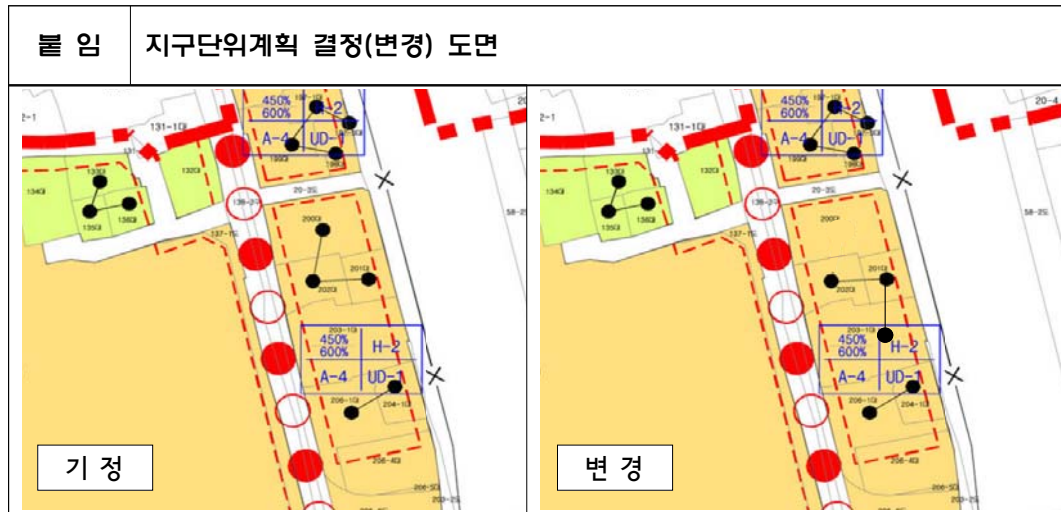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지번	면적(㎡)	구분	지번	면적(㎡)	구분
묘동 200번지	140.1	공동개발 (지정)	묘동 200번지	140.1	단독개발
묘동 201번지 (202번지와 합병)	115.4		-	-	
계	255.5		계	140.1	
묘동 203-1번지	173.6	단독개발	묘동 201번지 (202번지와 합병)	115.4	공동개발 (지정)
-	-		묘동 203-1번지	173.6	
계	173.6		계	289.0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고시 제2017-125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 2.25.)로 결정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돈의동 103-65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종로구청장

I. 결정(변경) 취지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돈의동 103-65번지의 2필지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돈의동 쪽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변경없음

2) 사회복지시설 :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돈의동 103-65외 2필지	-	증)183.9	183.9	-	-

☐ 사회복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돈의동 103번지 일대 쪽방 주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기반 및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함.

☐ 사회복지시설 건축계획(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60%이하	600%이하	· 제한없음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정하는 높이 이내)	-

☐ 사회복지시설 건축계획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건축계획 신설	· 사회복지시설 시설에 따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규모계획 수립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공동개발

☐ 공동개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분	가구번호	구분	동명	지번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①	기정	16	-	돈의동 103-66대	79.4	-	
			-	돈의동 103-68대	44.0	-	
		17	-	돈의동 103-65대	2.0	104.5	공동개발권장 : 106
			-	돈의동 106대	102.5		공동개발권장 : 103-65
	변경	16	-	돈의동 103-68대	44.0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①	· 돈의동 103-66, 103-65, 106번지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편입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불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V.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4) 및 종로구청 사회복지과(☎2148-259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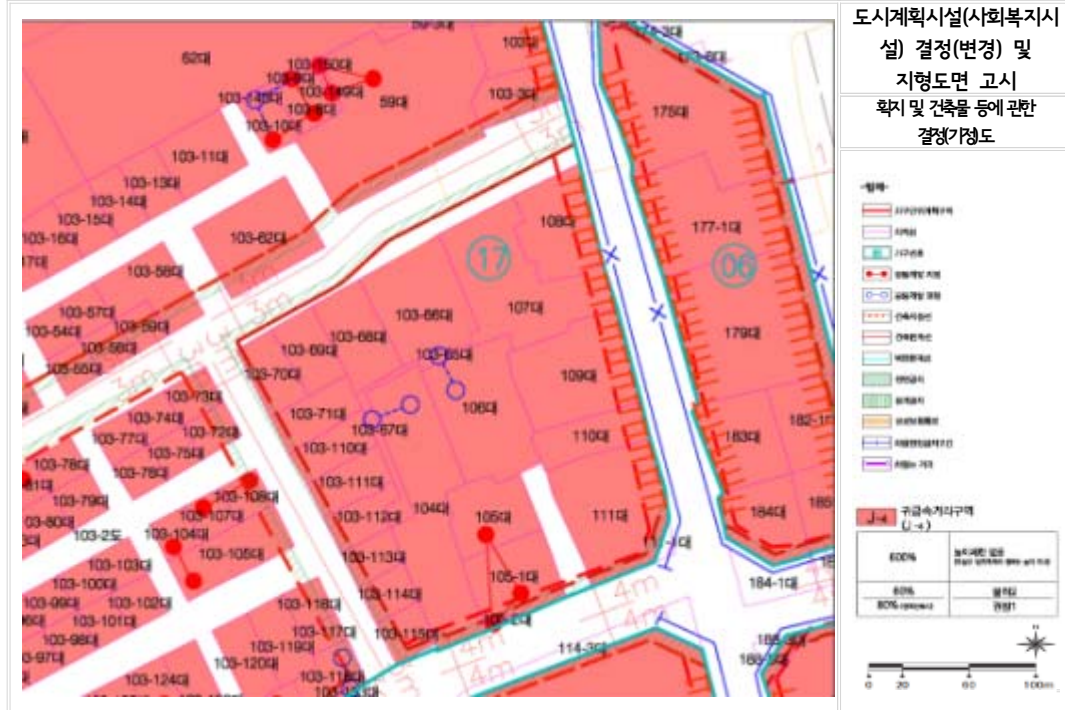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용산구고시 제2017-115호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고시 제2017-88호(2017.7.27.)로 승인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7년 9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명칭 :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 디에스한남 주식회사 대표자 이윤배, 송하영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에스 401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3. 사업위치 :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필지
4.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종류	사업내용	비고
주택건설	○ 대지면적 : 59,157.0㎡ ○ 연면적 : 225,621.6968㎡ ○ 건폐율 : 30.48% ○ 용적률 : 144.79% ○ 주용도 : 공동주택(3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9개동, 지하4층/지상5층~9층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 전용 206㎡ ~ 273㎡ 335세대 -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혼합구조,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 주차대수 : 1,708대	

5. 사업구역의 면적

토지구분	위치	지목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사업면적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 필지	대,전,임야	59,182.1	감) 25.1	59,157.0	
대지면적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 필지	대,전,임야	59,182.1	감) 25.1	59,157.0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구역면적 감소 : 25.1㎡ (59,182.1→59,157.0㎡)	• 사업계획승인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사업부지 일부 제척

6. 사업시행기간 : 2017. 07 ~ 2019. 10. 예정

7.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되는 사항

관계법령	조항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외인주택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59,182.1	감) 25.1	59,157.0	

※ 추후 측량성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구역면적 감소 : 25.1㎡ (59,182.1→59,157.0㎡)	• 사업부지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182.1	감) 25.1	59,157.0	100.0	
주거지 역	소계	59,182.1	감) 25.1	59,157.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	-	50.1	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572.3	감) 25.1	32,547.2	5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559.7	-	26,559.7	44.9	

-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57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547.2㎡	• 사업부지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면적 감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남산 주변	최고고 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676 일대	30m 이하	27,080 (26,370.8)	2001.11.5. (서고 제354호)	
기정	②	남산 주변	최고고 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18m 이하	36,020 (32,225.3)	2001.11.5. (서고 제354호)	사업구역 일부 제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면적 변경 32,233.5㎡→32,225.4㎡
기정	③	남산 주변	최고고 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685-2 일대	20m 이하	54,000 (105.8)	2001.11.5. (서고 제354호)	사업구역 일부 제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면적 변경 110.1㎡→105.8㎡
기정	④	남산 주변	최고고 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1,434,427 (34.0)	1995.4.6. (서고 제93호)	사업구역 일부 제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면적 변경 46.6㎡→34.0㎡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한남로	일반미관지 구	용산구 한남동 726-1 일대	21,600	900 (188)	양측 12m	1995.4.6. (서고 제93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구역 내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변경	㉔	용산구 한남동 680-1 일원	59,182.1	감) 25.1	59,157.0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확지면적 감소 : 25.1㎡ (59,182.1→59,157.0㎡)	• 사업부지 일부 제척에 따른 확지면적 감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확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용산구 한남동 680-1 일원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170% / 190% /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	190% / 200% / 25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 30m 이하	30m 이하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20m 이하
			최고고도지구 18m 이하	18m 이하
		건축 선	• 사업대상지 북·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 • 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 한남근린공원변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 공동주택 주거동 : 광역통경축(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10m 이상 이격	
		배치	• 공동주택 주거동의 경우 광역통경축(한남대로) 및 한남대로 27길변 10m 이격 •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광역통경축(한남대로)변 5m 이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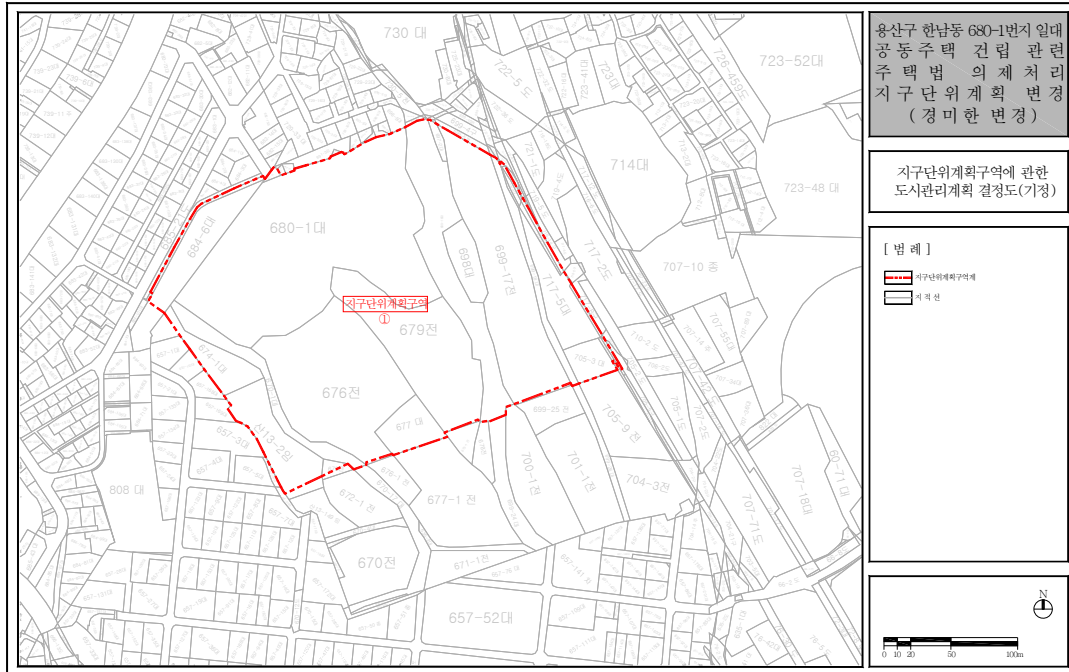
: 용산구청 7층 건축디자인과(☎02)2199-7500)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go.kr>) 및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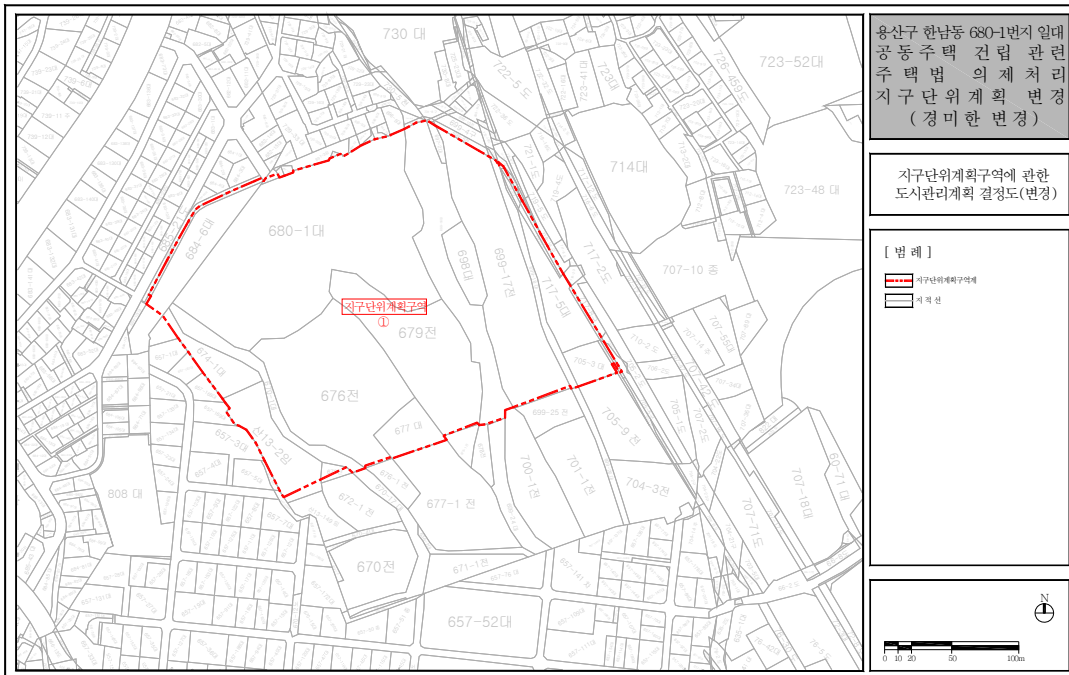
- 이하 여백 -

□ 붙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 노원구고시 제2017-100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 도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53번지 일대 및 상계동 1035-3번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 도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청소년수련시설 : 부족한 청소년 쉼터 공간 확보와 자기계발 프로그램 및 창의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공공공지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후 잔여부지 공공공지로 결정
- 도 로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라 폐쇄되는 기존 통행로의 대체도로 확보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 복지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 공공청사 :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교육 · 체험공간을 위한 재활용 전시 · 홍보관 건립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중계동 453-8일대	1,294	감)1,294	-	노원구고시 제2008-7호 (2008.02.14)	
폐지	공공공지	중계동 453일대	1,866	감)1,866	-	노원구고시 제2009-45호 (2009.11.26)	
변경	공공공지	중계동 453-2	1,139	감)256	942	노원구고시 제2006-51호 (2006.12.07)	1-1 1-2
		중계동 453	38				
		중계동 453-9	21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중계동 453일대	-	증)2,726	2,726	-	

○ 건축범위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중계동 453일대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류	-	6	국지 도로	87	중계동 157-60	중계동 453-6	이면 도로	-	

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1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계동 1035-3	-	증)524	524	-	
신설	1-2	공공 청사	재활용 전시·홍보관	상계동 1035-3		증)410	4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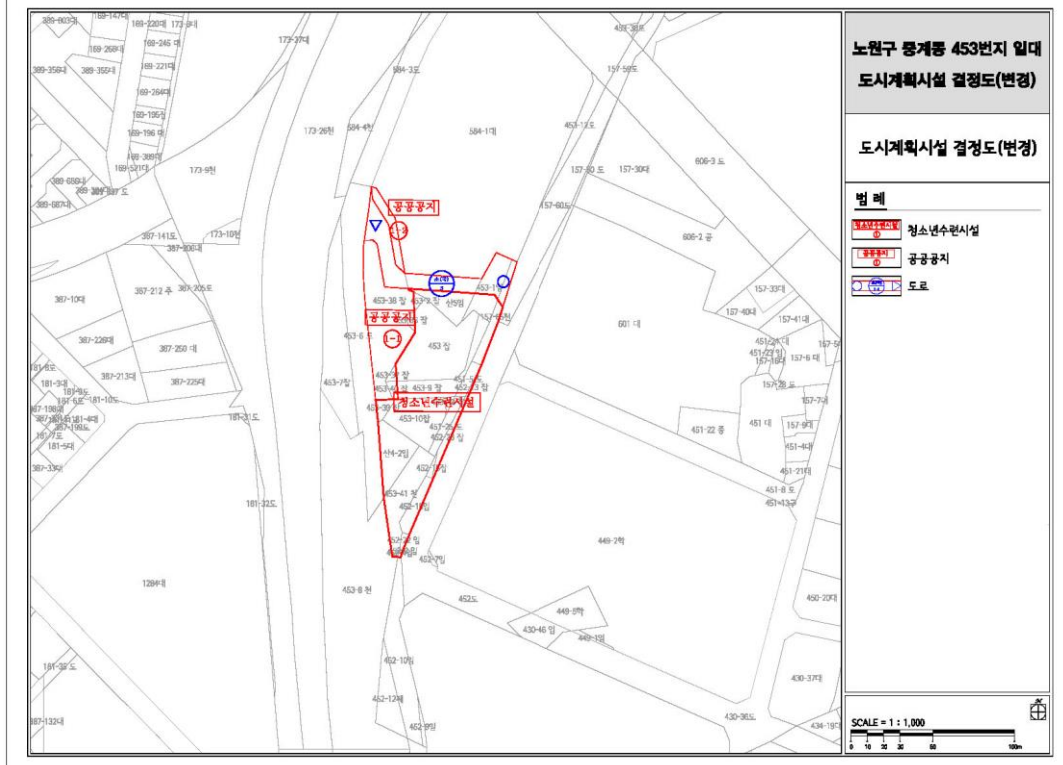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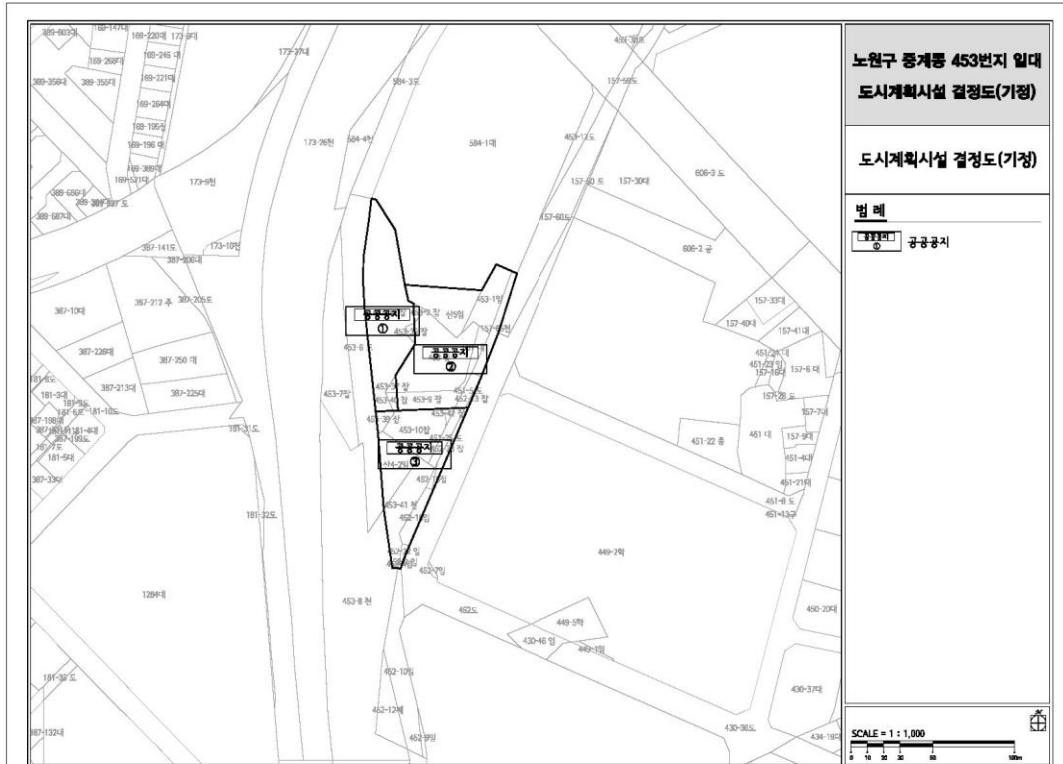
○ 건축범위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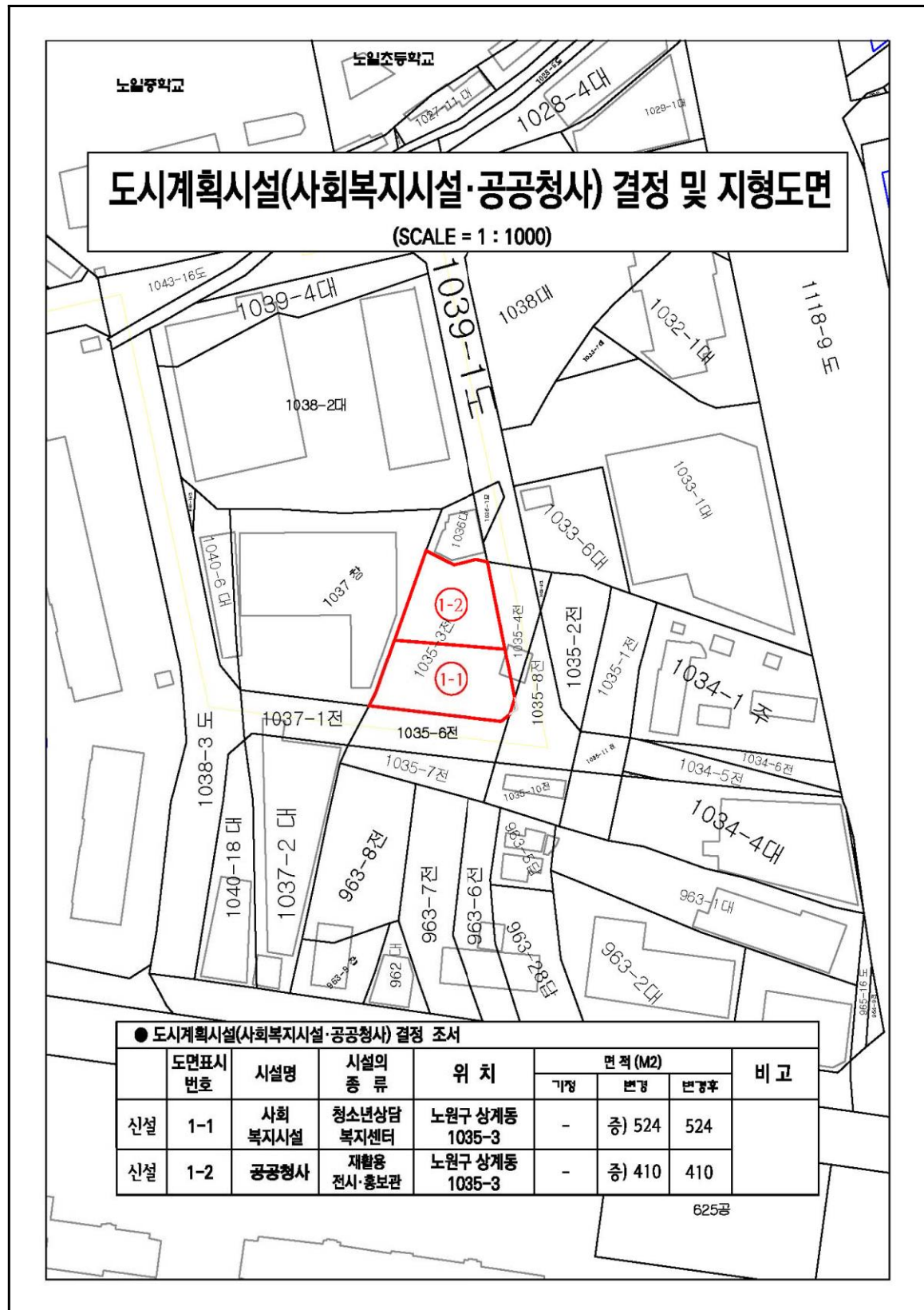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신설	사회복지시 설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노원구 상계동 1035-3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 역
신설	공공청사	재활용 전시·홍보관	노원구 상계동 1035-3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은평구고시 제2017-99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6호(2013.07.2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응암동 98-1 외 1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2필지)을 일단의 대지로 계획, 공동개발(건축물 신축) 추진

나.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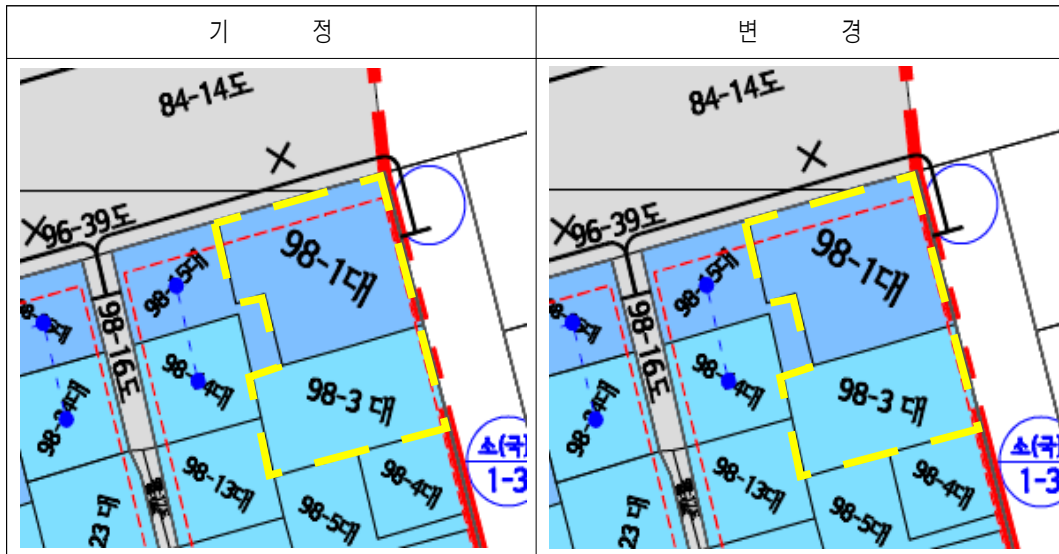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응암동	98-1	418.5	722.9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98-3	304.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변 경	응암동	98-1	418.5	722.9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로 계획되어 있는 2필지(98-1, -3)는 공동개발(722.9㎡)이 가능함
		98-3	304.4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공동개발 필지 : 응암동 98-1, -3)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양천구고시 제2017-6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6호(1984.1.7.)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된 신정동 322-11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양천구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신정동 322-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양천구청) 사업
- 명 칭 : 양천구청 해누리타운 용도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김수영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321-4)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대지면적 : 2,958.5㎡(변경없음)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9층(변경없음) / 연면적 : 15,152.67㎡(변경없음)
- 건폐율 : 58.44%(변경없음) / 용적률 : 316.4%(변경없음)

- 변경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상1층	직장보육시설/ 업무시설	1,417.65㎡	노유자시설(어린이집)	282.98㎡	
			직장보육시설/업무시설	1,134.67㎡	

마. 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17월 9월
- 준공예정일 : 2018월 4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양천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축과(☎02-2620-3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고시 제2017-66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13-7 외 2필지 금강에이스건설(주)(대표 노정범)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양천구 신월동 513-7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금강에이스건설(주) 대표 노정범 외 16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3길 9 5층(양재동)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13-7 외 2필지

나.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 대지면적 : 955.1㎡

라.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3개동, 48세대),근린생활시설

라.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건축면적 : 477.3㎡ - 건 폐 율 : 49.97%

- 연 면 적 : 2,618.7㎡ - 용 적 륜 : 198.16%

4.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단위 : m², 세대)

A동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39.62	39.12	17.37			
6	4	3			

B동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25.57	28.60				
10	10				

C동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38.79	38.44	27.93			
5	5	5			

5. 의제 처리사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호 관련 사항

◆ 금천구고시 제2017-80호

가산동 505-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우리 구 아래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적정(조건)함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코자 하며,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보와 구보에 각각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가. 대지위치 : 금천구 가산동 505-19호

나. 사업주체 : 한국후지필름(주)

다.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라.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8층, 연면적 25,483.76m²

마. 건물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건 폐 율 : 31.1%, 용 적 륜 : 299.98%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 면 허 세 : 67,500원

자. 사업계획승인번호

- 2015-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15.12.02.)

차. 변경승인 내용

- 건축개요 변경(용도별 면적표 주차장면적 비율 변경)
- 서측면 도로 교통시설물 변경(정차금지대/신호기 추가)
- 장식가벽 삭제 / 옥상 슬래브 OPEN 수정
- 무근두께조정(B2F : 250mm→150mm B1F : 200mm→100mm)
- 파라펫 높이 수정(4,000mm→3,450mm)
- 엘리베이터 피트깊이 수정(1,600mm→2,400mm)

◆ 관악구고시 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164호(2017.8.31.)로 변경 열람공고한 “관악산,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1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변경전) → 신림동 산105-53번지 일대 (변경후)
- 2) 변경내용 :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등 (붙임참조)
- 3) 면 적 : 3,930㎡ (변경 전) → 4,680㎡ (변경 후)
- 4)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전)

○사 업 명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변경 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2,999	3,930							
1	신림동 산105- 24	임야	3,914	180	임야	김아*	645624분의 104139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20번길 ***호, ***호(토평동)			
						문인*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동 ***호			
						문 *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동 ***호			
						박미*	645624분의 23128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호			
						박*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박중*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동 ****호			
						성순*	645624분의 1428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1 큰마을대림아파트 ***호	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호	가등기 권자
						유민*	645624분의 34692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윤성*	645624분의 1041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검재로24, ***호 (휘경동, 서울가든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신림동 산105-23	임야	7,207	850	임야	이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동작 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서울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3	신림동 산105-20	임야	8,198	350	임야	김부*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			
4	신림동 산105-18	임야	53,680	2,550	임야	진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호(세종로)	오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동 ***호(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가등기 권자
									(주) 조흥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개봉동지점)	근저당 권자
									(주) 신한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개봉동지점)	근저당 권자
									서울신 용보증 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종로지점)	근저당 권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후)

○사 업 명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680	4,680							
1	신림동 산105-53	임야	180	180	임야	김아*	645624분의 104139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20번길 ***-**, ***호(토명동)			
						문인*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 ***호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림동 산105 -53	임야	180	180	임야	문 *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 ***호			
						박미*	645624분의 23128	서울 양천구 신월동 ***-***			
						박*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박종*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성순*	645624분의 1428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1 큰마을대림아파트 ***-*****	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	가등기권자
						유민*	645624분의 34692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윤성*	645624분의 1041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24, ***호 (휘경동, 서울가든아파트)			
2	신림동 산105 -52	임야	850	850	임야	이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동작 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서울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3	신림동 산105 -51	임야	350	350	임야	홍숙*	8198분의 7378	경상남도 김해시 금과대로1341번길 * ***호			
						김동*	8198분의 8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2길 **(북아현동)			
4	신림동 산105 -50	임야	3,300	3,300	임야	진영*	53680분의 26840 (가등기권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호(세종로)	오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동 ***호(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가등기권자
									서울신 용보증 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종로 지점)	근저당권자

◆ 서초구고시 제2017-111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구 분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GC-6	공동 개발	서초동 1574-10,-11,-12,- 13	1,105.4	1574-10,-11/-12,-13 각각 공동개발 지정 1574-10,-11/-12,-13 공동개발 권장	1574-10,-11,-12,-13 공동개발 권장	-
	보차혼용 통로	서초동 1574-10,-12,-13	-	-	보차혼용통로 (B=3.5m)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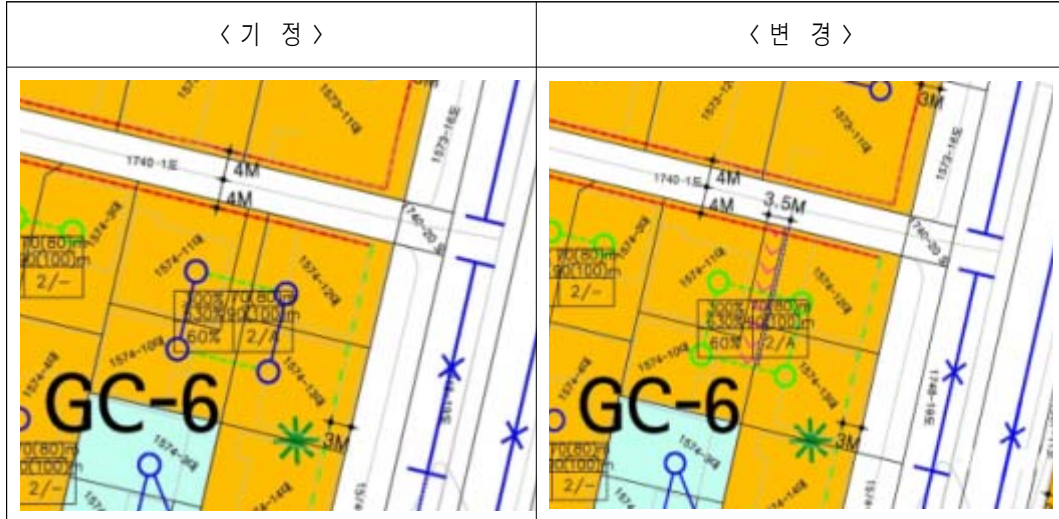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초동 1574-10,-11,-12,-13



◆ 송파구고시 제2017-12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4차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7.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47-2번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도로확폭 등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공 제397호 ('84.7.4)	-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0	6~7	국지 도로	307	방이동 43-5	방이동 46-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70	6~7 (7)	국지 도로	307 (18.5)	방이동 43-5	방이동 46-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주 1) 폭원, 연장의 ()는 금회 확폭되는 구간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본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0	소로 3-70	◦폭원 : 6~7m (사업부지:6m → 7m)	◦ 방이동 47-2번지 신축을 위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 역 개발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연접 도로 일부구간 1m 폭원 확폭

- 2)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철도 : 변경없음
- 4)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1) 광장 : 변경없음
- 2) 공원 : 변경없음
-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 4) 시장 : 변경없음
- 5) 공공청사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건축 한계선	건축한계선 일부 조정 :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2m ⇒ 1m	서측 도로 1m 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차도형)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차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면공지	전면공지 폭원조정 : 사업부지 전면공지 2m(차도형) ⇒ 1m(차도형)	서측 도로 1m 확폭에 따른 전면공지 폭원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④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

■ 다음사항을 반영

- 건축물 전면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그 기능에 맞춰 규모, 위치 및 디자인을 건축심의시 검토하여 처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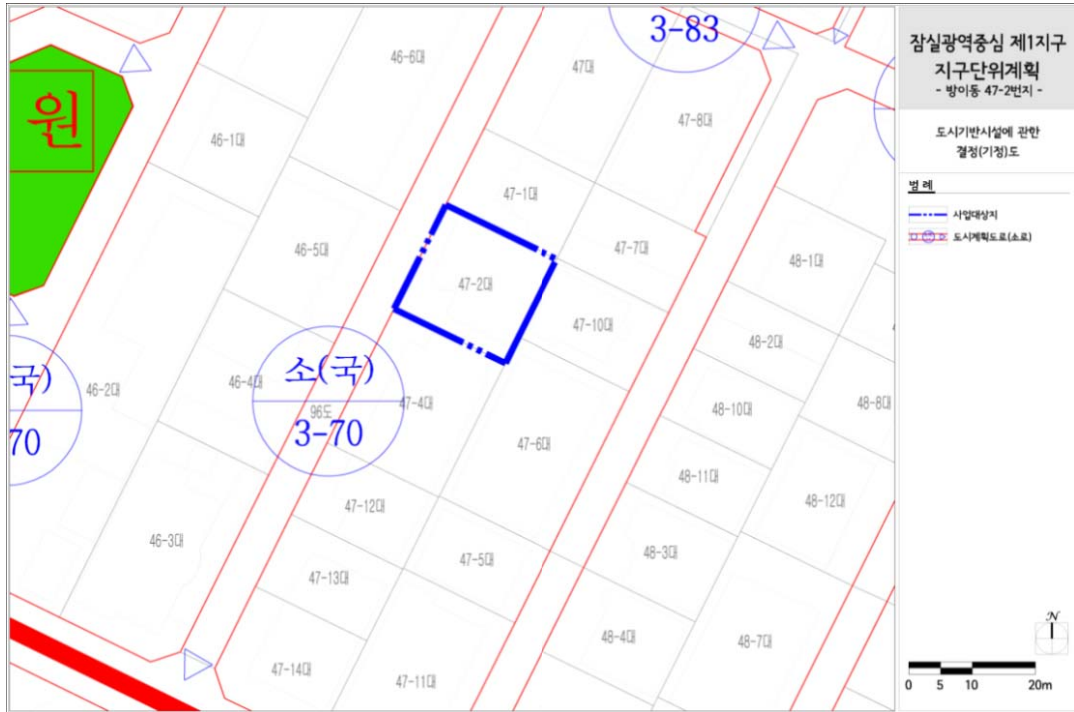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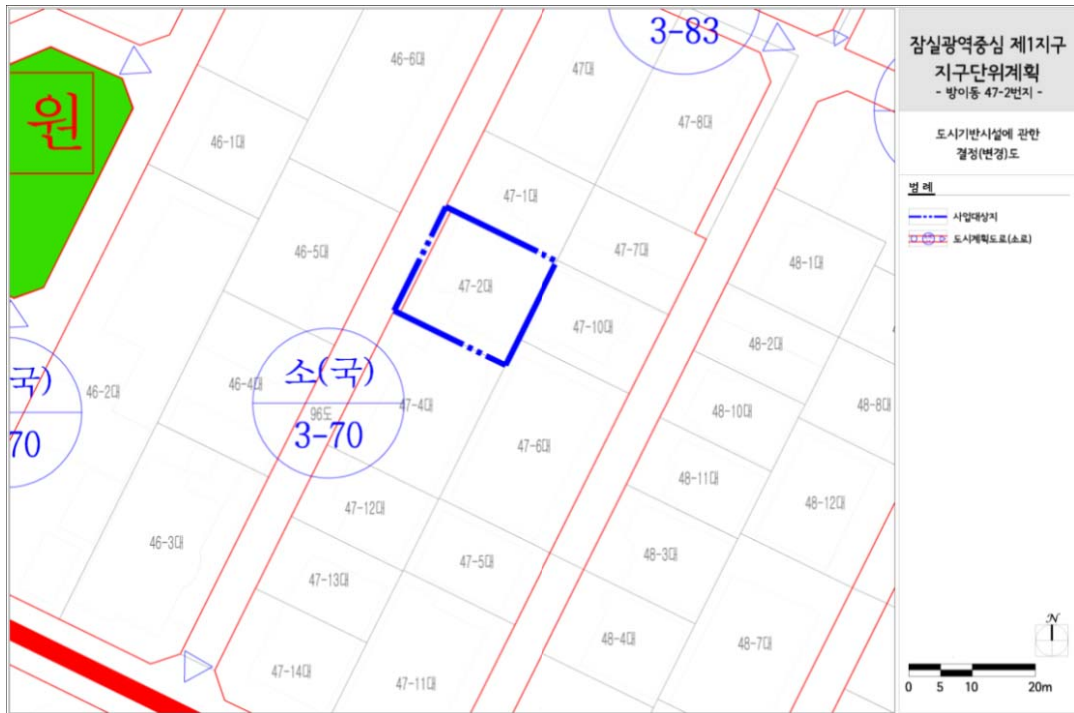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0)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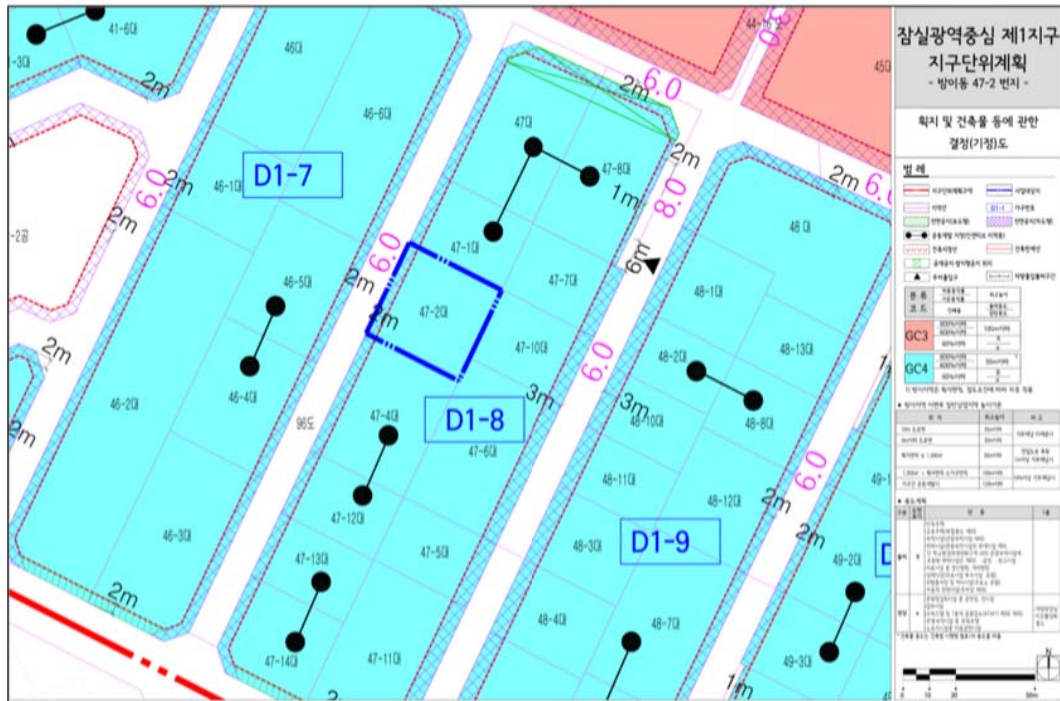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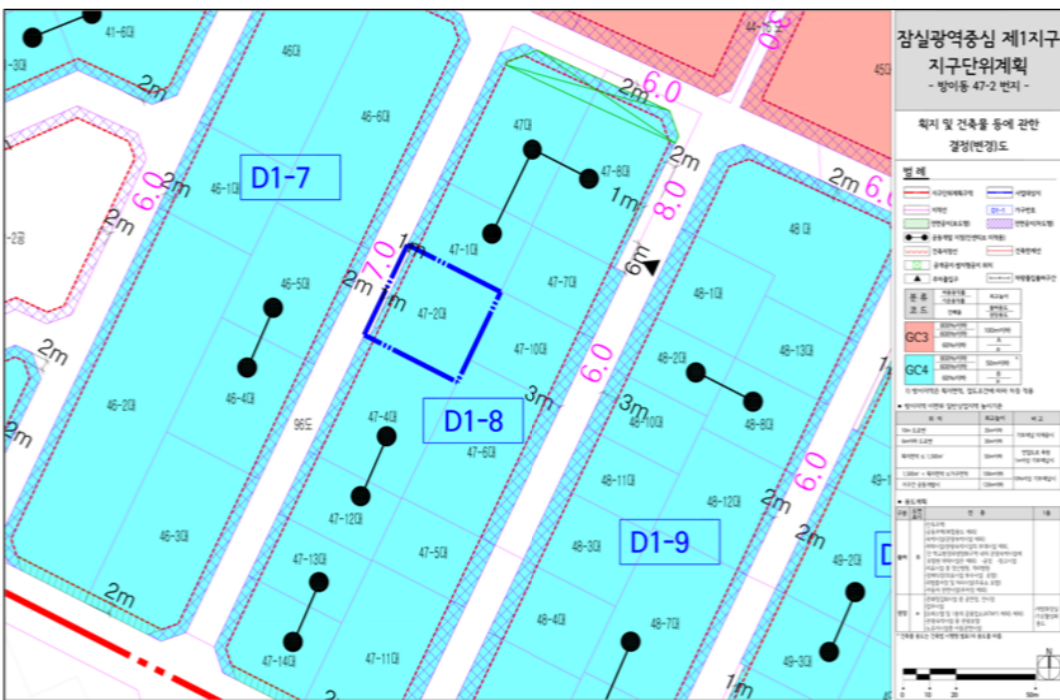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송파구고시 제2017-130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4차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7.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49-11번지 외 1필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도로확폭 등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공 제397호 (' 84.7.4)	-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2	6~8 (7)	국지 도로	321	방이동 49-6	방이동 5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72	6~8 (8)	국지 도로	321 (24)	방이동 49-6	방이동 5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기정	소로	3	84	4~6 (4)	국지 도로	39	방이동 49	방이동 49-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84	6 (6)	국지 도로	39 (20)	방이동 49	방이동 49-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주 1) 폭원, 연장의 ()는 금회 확폭되는 구간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2	소로 3-72	◦ 폭원 : 7m→8m	◦ 방이동 49-11,12번지 신축을 위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연접도로 일부구간 1m 폭원 확폭
소로 3-84	소로 3-84	◦ 폭원 : 4m → 4~6m	◦ 방이동 49-11,12번지 신축을 위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연접도로 일부구간 2m 폭원 확폭

- 2)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없음
 4)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1) 광장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4) 시장 : 변경없음
 5) 공공청사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3.5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2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일부 조정 :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2, 3.5m ⇒ 1m, 2m	◦동측 1m, 북측 2m 도로확폭 및 북측 건축선 0.5m 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 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 1~4m (대상지 : 2m~3.5m (차도형))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방이지역 : 1~4m (대상지 : 1m~2m (차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면공지	◦ 전면공지 폭원 조정 - 동측 2m ⇒ 1m - 북측 3.5m ⇒ 2m	◦ 동측 1m, 북측 2m 도로확폭 및 북측 건축선 0.5m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 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주차 출입구		◦ 공동주차 출입구 - 방이지역 : 2개소 ◦ 주차 출입구 - 방이지역 : 5개소	◦ 공동주차 출입구 - 방이지역 : 2개소 ◦ 주차 출입구 - 방이지역 : 6개소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주차 출입구	◦ 방이동 49-11외 1필지(공동개발) 신축에 따른 주차출입구 지정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차출입구 미 지정시 위계가 낮은 도로에 출입구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대지형 상 및 건축배치 상 곤란하여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	결정도 참조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④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

■ 다음사항을 반영

- 도로 가각부 계단실 주변 여유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수고가 높은 나무를 추가 식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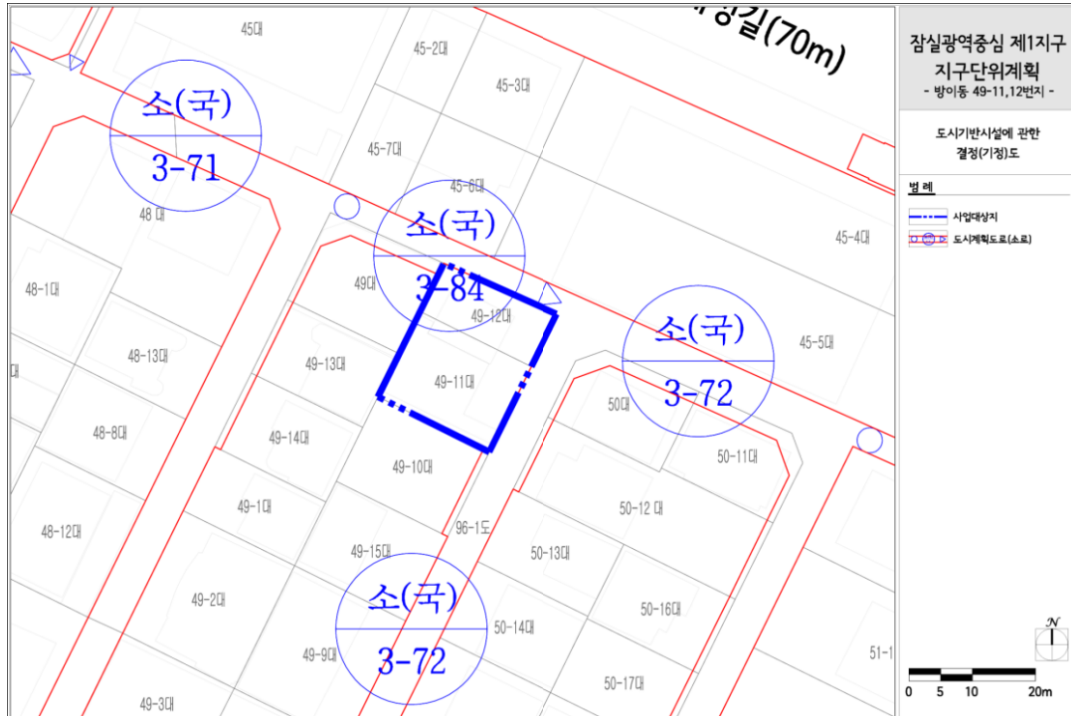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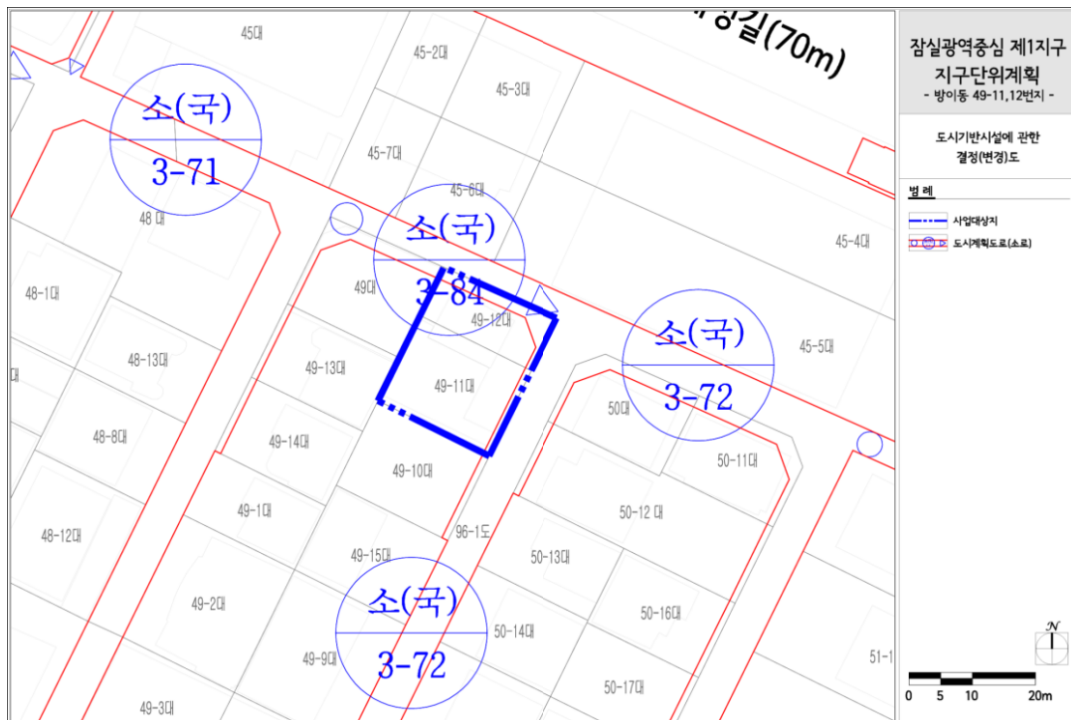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0)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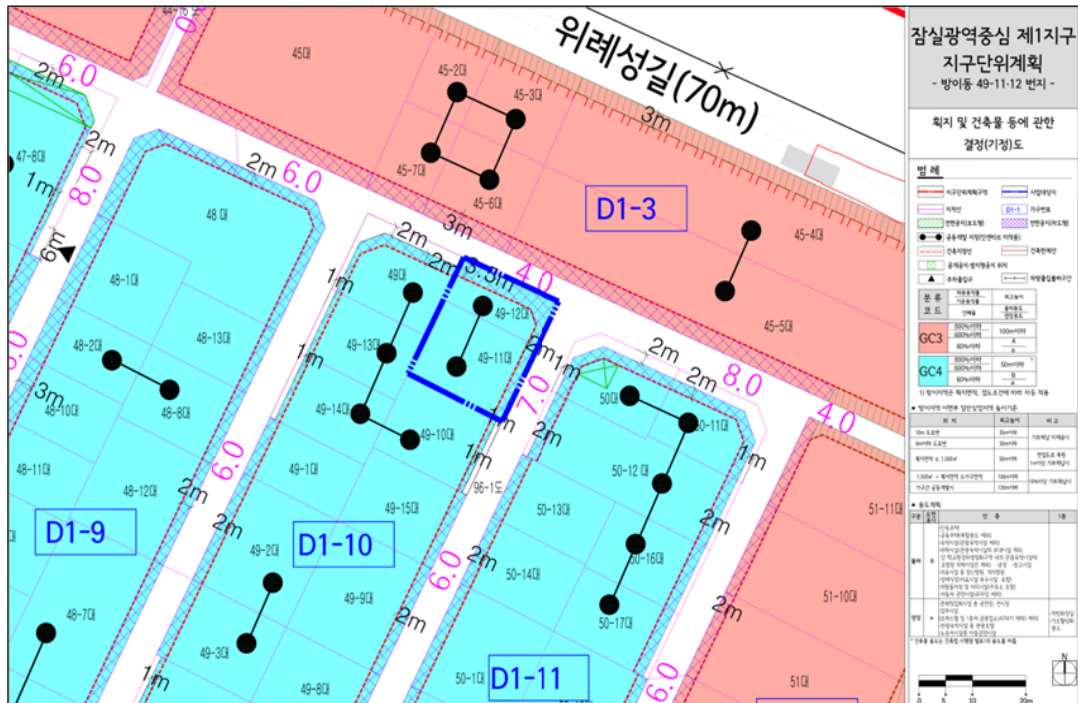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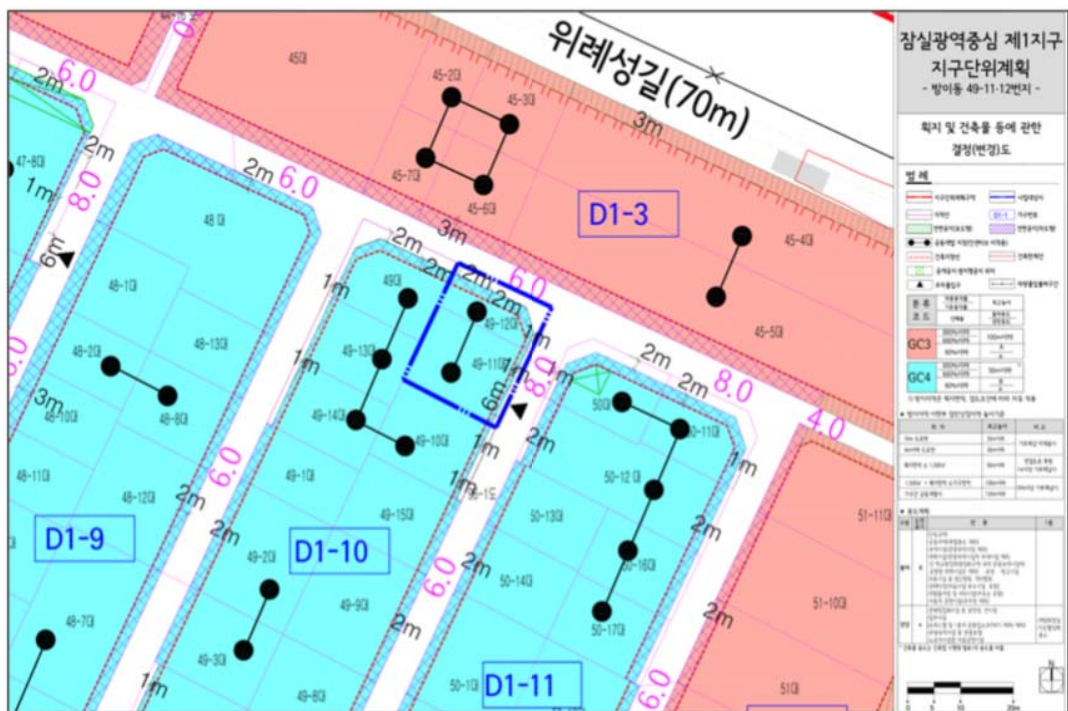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송파구고시 제2017-131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3차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2.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방이동 50-10번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도로확폭 등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공 제397호 ('84.7.4)	-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2	6~8	국지 도로	321	방이동 49-6	방이동 5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72	6~8 (7)	국지 도로	321 (20.8)	방이동 49-6	방이동 5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주 1) 폭원, 연장의 ()는 금회 확폭되는 구간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62	소로 3-62	◦ 폭원 : 6m → 6~7m	◦ 방이동 50-10번지 신축을 위해 방이동 이면부 상업 지역 개발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연 접도로 일부구간 1m 폭원 확폭

- 2)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없음
 4)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1) 광장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4) 시장 : 변경없음
 5) 공공청사 : 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 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 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 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 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건축 한계선	◦ 건축한계선 일부 조정 :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2m ⇒ 1m	◦ 동측 도로 1m 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차도형)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차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면공지	◦ 전면공지 폭원조정 : 사업부지 전면공지 2m(차도형) ⇒ 1m(차도형)	◦ 동측 도로 1m 확폭에 따른 전면공지 폭원축소 (선형변경 없음)	결정도 참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④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

■ 조건사항

- 차량진출입구는 폭원을 축소조정하고 보행공간과 포장패턴을 동일하게 조성할 것
- 보행공간 폭은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하되 대상지내 여유공간과 포장재를 동일하게 일체적으로 조성하고 차도경계부에 블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안전 및 무단주차를 방지할 것

■ 권고사항

- 상업지역내 가로활성화를 위한 1층 상업용도 유치를 검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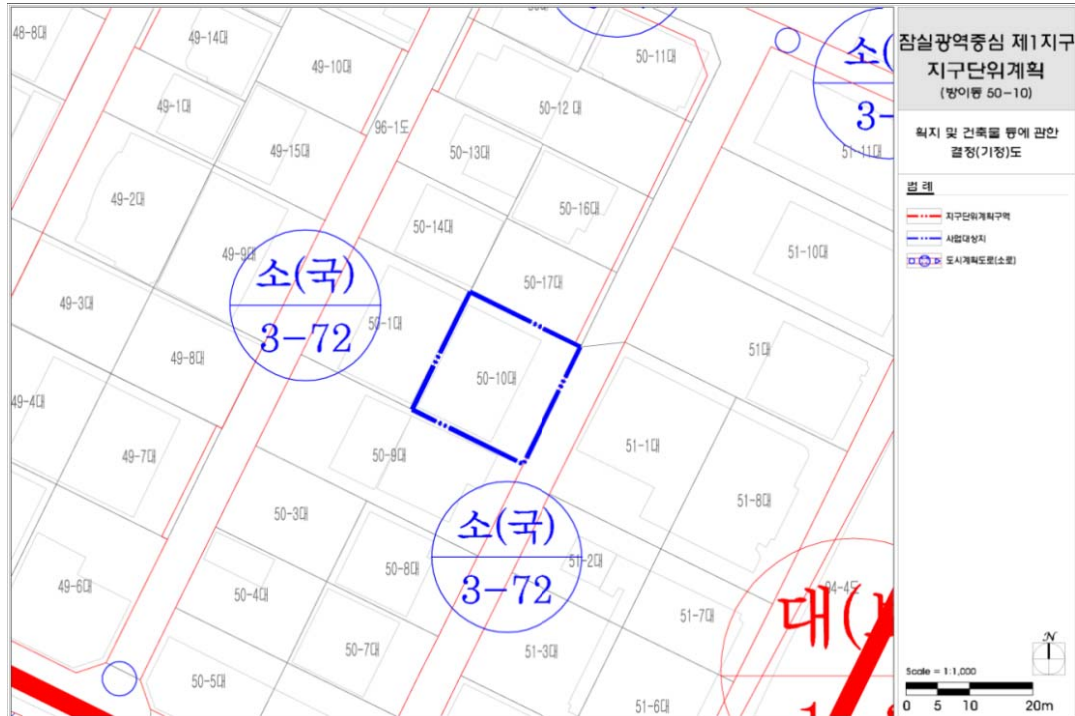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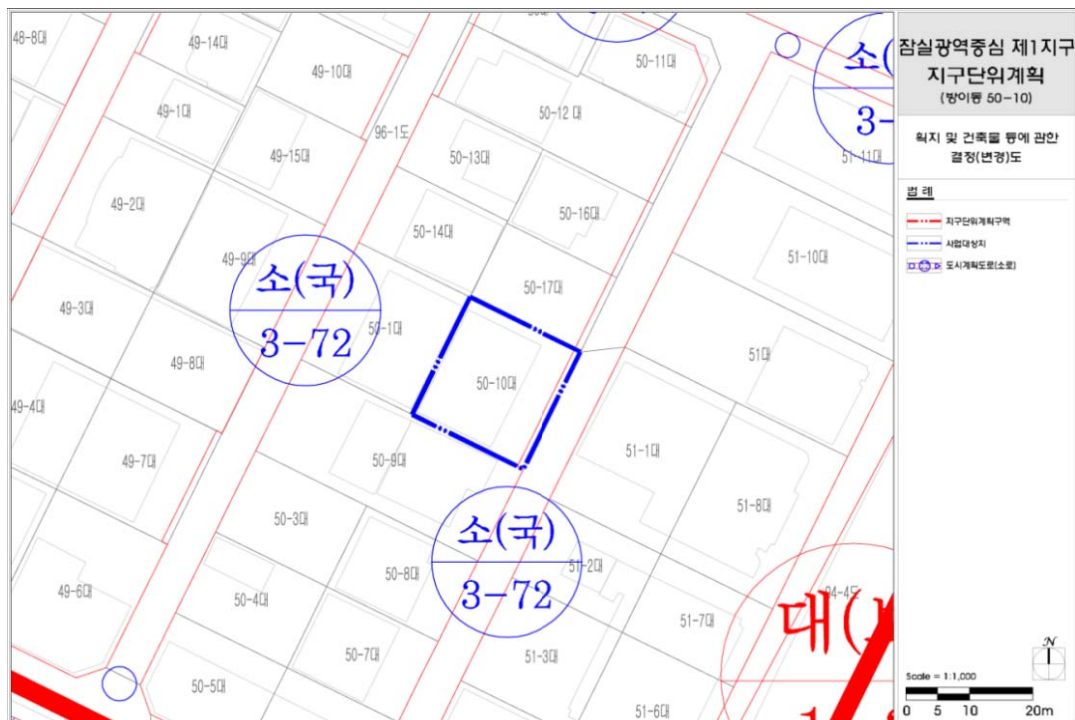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0)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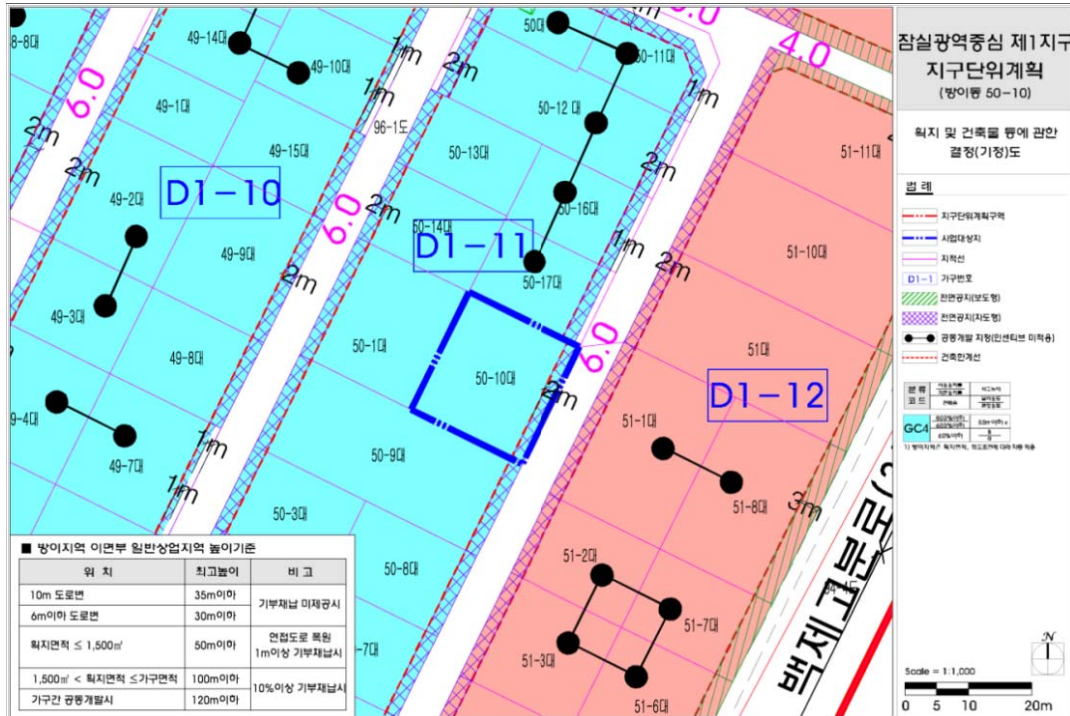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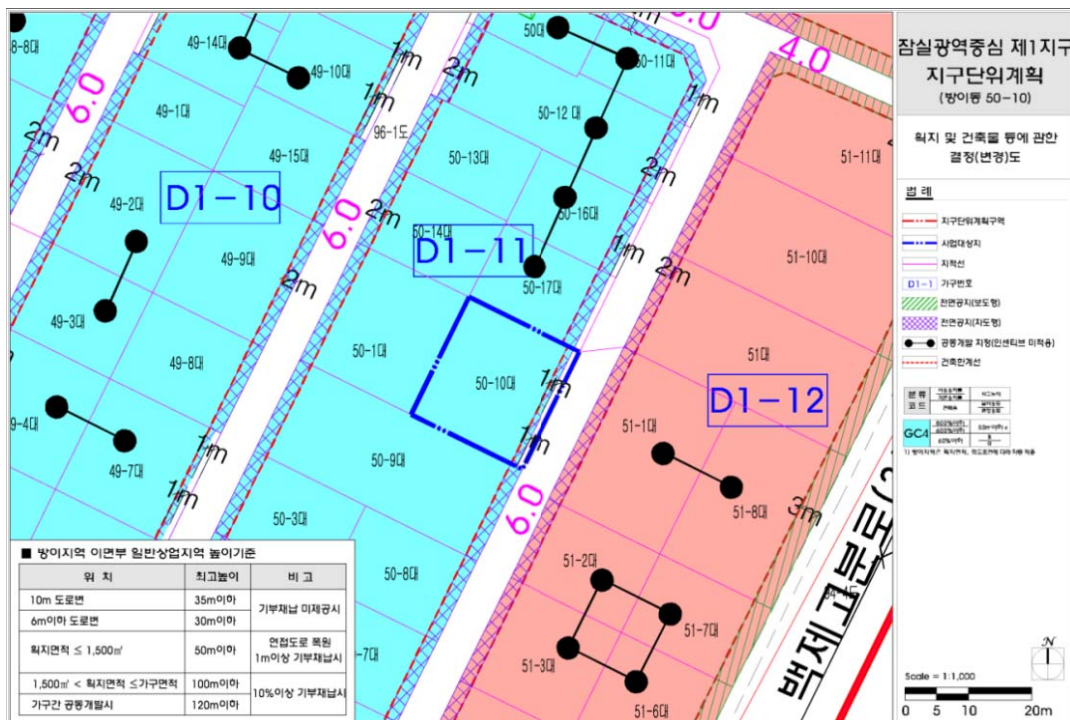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송파구고시 제2017-13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85호(2017.6.22)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제1지구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사업의 명칭 : 방이동 오피스텔 신축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토지면적 : 28.81㎡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 면적 176.819(전유면적)㎡

○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년 11월

○ 준공예정일 : 2020년 04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 계											
1	방이동	41-8,9,10, 14,15,16	대	1,630	-	주식회사하 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 및 도시계획과 사무실에 관련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 ☎ : 02-2147-3038, 도시계획과 ☎ : 02-2147-3000)

구 공 고

◆ 성북구공고 제2017-11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29호(2017.9.14)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된 「석관동 332-618 외 5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89)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618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석관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다. 사업시행 규모 : 518㎡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사무수임자 :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8. 12. 31.

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성북구청 9층 공원녹지과(☎ 2241-3689)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사무수입자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석관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석관	332-618	대	73.0	73.0	강동구 성내로12길 13(성내동)	김은주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상계동)	노원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2	석관	309-4	대	85.0	85.0	중구 다산로36길 109, 7동	황경태	성북구 돌곶이로 39(석관동)	석관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3	석관	332-616	대	90.0	90.0	광진구 동일로24길 5, 102동 2204호	이성주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30-12, 502호	김기남	근저당권	
4	석관	332-630	대	90.0	90.0	성북구 석관동 332-630	김춘배	동대문구 답십리2동	답십리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5	석관	332-619	대	90.0	90.0	강남구 개포로109길 9, 217동 1305호	최병선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상계동)	노원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6	석관	332-620	대	90.0	90.0	성북구 석관동 332-620	한종수	송파구 중대로 24, 229동 201호	이상원	근저당권	
								-	-	-	

별첨 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사무수임자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석관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 종류 및 내용	
1	석관동 332-618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연와조	59.00	57	주거	강동구 성내로12길 13(성내동)	김은주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상계동)	노원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시멘트블럭조	-	5	창고			송파구 중대로 241, 229동 201호	이상원	근저당권	
2	석관동 309-4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연와조	72.04	71	주거	중구 다산로36길 109, 7동	황경태	성북구 돌곶이로 39(석관동)	석관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시멘트블럭조	2.55	3	창고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30-12,502호	김기남	근저당권	
3	석관동 332-616	건물 (주택)	연와조	73.88	70	주거	광진구 동일로24길 5, 102동 2204호	이성주	성북구 담심리2동	담심리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시멘트블럭조	-	4	화장실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7(상계동)	노원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4	석관동 332-630	건물 (주택)	연와조	68.29	70	주거	성북구 석관동 332-630	김춘배	송파구 중대로 24, 229동 201호	이상원	근저당권	
			시멘트블럭조	-	4	창고			성북구 석관동 332-630	김춘배	근저당권	
5	석관동 332-619	건물 (주택)	연와조	71.37	62	주거	강남구 개포로109길 9, 217동 1305호	최병선	성북구 석관동 332-620	한중수	-	
			시멘트블럭조	-	3	화장실			성북구 석관동 332-620	한중수	화장실	
6	석관동 332-620	건물 (주택)	연와조	71.37	72	주거	성북구 석관동 332-620	한중수	성북구 석관동 332-620	한중수	-	
			시멘트블럭조	-	1	화장실			성북구 석관동 332-620	한중수	화장실	

◆ 강북구공고 제2017-1020호

**지구단위계획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및 「우이초교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24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17. 9. 21.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17.10.13.까지(22일간)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4)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유동 277번지일대	53,315	증)32,857	86,172	1996.7.5. (서고 제195호)	-
신설	우이초교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유동 360-1번지일대	-	증)71,448	71,448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강북구 수유동 277번지 일대 · 면적 - 기정: 53,315㎡ - 변경: 86,172㎡	경전철 개통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중심시가지 조성을 위한 경전철 역세권지역으로 구역확장
신설	우이초교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강북구 수유동 360-1번지 일대 · 면적: 71,448㎡	경전철 개통에 따라 신규생활권 거점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정

※ 세부구역의 범위, 지구단위계획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 도서와 같음

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용

1) 제한지역: 2개

◦ 4.19사거리지구단위계획 구역, 우이초교사거리지구단위계획 구역

2)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1호 건축물의 건축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3) 제한 예외대상

◦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역세권활성화 및 가로환경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

▶ 지구단위계획 공람(안)에 따라 건축(한계)선, 쌈지형공개공지, 보차혼용통로, 불허용도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신규) 및 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사.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마포구공고 제2017-87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성산유수지 복개 녹지 및 주차장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치수과(☎3153-981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5(성산유수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 명 칭 : 성산유수지 복개 녹지 및 주차장조성 사업
- 다. 사업규모
- 녹지조성 : A=1,260㎡
- 주차장 건설 : 주차장 조성 A=740㎡(34면)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06. 30까지
- 바. 열람기간 : 2017. 09. 21 ~ 2017. 10. 10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성산유수지 복개 녹지 및 주차장조성 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785	2,785							
1	성산동	445	유지	2,785	2,785	유수지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편입 내역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산동	445	배수 펌프장	철근콘크 리트조	306.6㎡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단독주택	벽돌조	160.38㎡						
			공공이용 시설	벽돌조	68.92㎡						

◆ 구로구공고 제2017-13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6호(2015.9.10)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지적승인 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5-51호(2015.4.9) 및 제2016-153호(2016.10.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2396),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guro.go.kr> → 고시·공고)

다.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온수동 6-3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사유토지보상
- 3) 사업의 면적(변경) : 347㎡ 중 157㎡
-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성 명 : 구로구청장
 - ㄴ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 5)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 : 따로 붙임
- 7)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구 분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 권리명세	
계				33,575	33,385						
1	변경 없음	온수동 9-49	임야	8,064	8,06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2	변경 없음	온수동 9-44	임야	170	17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3	변경 없음	온수동 9-50	임야	1,794	1,79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4	변경 없음	온수동 산1-1	임야	3,687	3,68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5	변경 없음	온수동 산3	임야	8,908	8,90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6	변경 없음	온수동 산4-19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7	변경 없음	온수동 산4-20	임야	45	4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8	변경 없음	온수동 산4-21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9	변경 없음	온수동 산4-22	임야	4,018	4,01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10	변경 없음	온수동 산4-23	임야	1,342	1,34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매수]
11	변경	온수동 6-3	전	347	157	정준○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구로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구로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근저당권
							구로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구로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지상권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운수동 6-3	담장	조적	1식	담장	정준○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구로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지상권	
		화단	조적	1식	화단						
		수목	노티나무 등	20주							

◆ 관악구공고 제2017-125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 신원동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280㎡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계				280					
1	신림동 산159-5 (분할예정 지번 : 신림동 산159-46)	임야	28,655	280 (분할면적)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 서초구공고 제2017-119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4-88(2014.07.10)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초구고시 제2014-135(2014.11.06)호로 실시계획인가된 방배동 874-4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나. 명칭 : 반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반포세무서장
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4-4(방배로163)

3. 공사완료현황

시설명 (위치)	사업시행 내용
반포세무서 (서초구 방배동 874-4번지)	- 공공청사 신축 · 대지면적 : 2,107.2㎡ · 건축면적 : 1,000.10㎡ · 연면적 : 11,080.00㎡ · 건폐율/용적률 : 47.46%/249.28% · 층수 : 지하4층~지상6층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7-1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503호(1969. 6.27.)로 최초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16-5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서초동1748-11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48-11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5호선)사업
- 명칭 : 서초지구(꽃마을)복합단지 외곽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중로1류(집산도로) 연장 260m, 폭원 20.0~26.0m

구분	노선규모	노선위치	금회시행	금회시행지 위치	비 고
도로 (중1-95호선)	L=1,500m B=20~26m	시점: 방배동 1007-4 종점: 서초동 1005-6	L=260m B=20~26m	시점: 서초동 1056-88 종점: 서초동 1005-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엠스퀘어피에프브이(주) 대표 맹진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 착수일 : 2016.06.16.
- 사업 완료일 : 2017.06.15.

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

(단위: m²)

	당초					변경					면적 증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1498-11	대	161.7	100.5	서초구	1498-57	대	100.3	100.3	서초구	-0.2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2	1498-28	대	64.2	63.8	서초구	1498-59	대	63.8	63.8	서초구	0.0	지번변경
3	1498-27	도	195.6	49.9	서초구	1498-58	도	49.8	49.8	서초구	-0.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4	1741-1	도	5,156.7	92.6	서초구	1741-24	도	92.4	92.4	서초구	-0.2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5	1741-2	도	5,964.8	4.6	서초구	1741-25	도	4.5	4.5	서초구	-0.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6	1498-47	도	169.6	19.4	서울시	1498-62	도	19.5	19.5	서초구로 귀속예정	0.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7	1498-1	도	853.2	150.9	서울시	1498-55	도	150.7	150.7	서초구로 귀속예정	-0.2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8	1498-10	도	479.1	136.9	서울시	1498-56	도	136.6	136.6	서초구로 귀속예정	-0.3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9	1498-29	도	0.4	0.4	서울시	1498-29	도	0.4	0.4	서초구로 귀속예정	0.0	변경없음
10	1498-30	도	397.2	168.4	서울시	1498-60	도	168.4	168.4	서초구로 귀속예정	0.0	지번변경
11	1498-39	도	246.5	231.9	서울시	1498-61	도	232	232	서초구로 귀속예정	0.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12	1505-1	도	299.2	299.2	서울시	1505-1	도	299.2	299.2	서초구로 귀속예정	0.0	변경없음
13	1505-7	도	74.3	74.3	서울시	1505-7	도	74.3	74.3	서초구로 귀속예정	0.0	변경없음
14	1748-11	도	10,525.4	5,112.4	서울시	1748-66	도	4765.1	4765.1	서초구로 귀속예정	0.0	
15	1005-10	잡	10,797.0	60.0	서울시	1005-12	잡	69	69	서초구로 귀속예정	9.0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계				6,565.2					6,226.0		8.1	

사.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87)

아. 관련서류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관련도서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8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7-1198호

**방배지구중심(내방역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방배지구중심(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방배지구중심(내방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874-5번지 일원	-	증) 212,856.4	212,856.4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안)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방배동 874-8번지 일대	888.8	-
신설	특별계획구역 2	방배동 874-2번지 일대	4,127.7	-
신설	특별계획구역 3	방배동 898-3번지 일대	3,024.9	-
신설	특별계획구역 4	방배동 936-12번지 일대	2,865.6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방배동 852-22번지 일대	7,484.1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2	방배동 874-1번지 일대	3,295.0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3	방배동 875-1번지 일대	3,218.3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4	방배동 851-5번지 일대	7,414.5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5	방배동 876-19번지 일대	2,670.3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6	방배동 897-1번지 일대	6,150.2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7	방배동 901-1번지 일대	1,908.5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8	방배동 936-10번지 일대	2,630.2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9	방배동 332-7번지 일대	2,893.3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0	방배동 332-1번지 일대	4,727.7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1	방배동 937-1번지 일대	3,468.6	-

4) 가구 및 획지 규모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 등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등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방배지구중심(내방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8번지 일원
- 면 적 : 212,856.4㎡
- 계획입안권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계획승인권자 : 서울특별시장

2)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10.18(수). 14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43 (방배동) 방배1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공휴일 제외)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92), 방배1동주민센터(☎2155-7743), 방배2동주민센터(☎2155-7789), 방배4동주민센터(☎2155-7832)

마.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바.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서초구공고 제2017-12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문화지구) 결정(안) 열람공고

예술의 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자원 및 문화특성을 보존하고 육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구 : 문화지구)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문화지구) 결정(안) 열람공고

1.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02-2155-6225), 서초3동주민센터(☎02-2155-7485)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문화지구) 결정(안)
○ 용도지구 결정 조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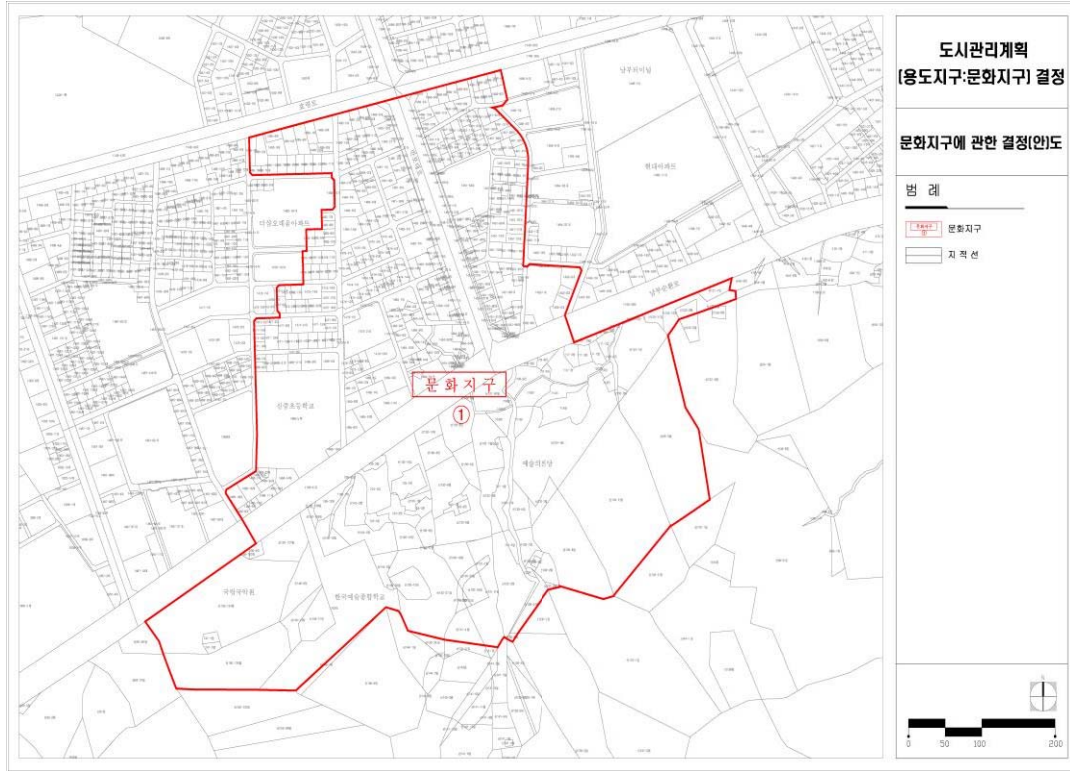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서초음악 문화지구	서초구 서초3동 1451번지 일대	410,109	-	-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서초음악 문화지구	• 신설 - 면적 : 410,109㎡	•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활동을 지원·활성화하여 • 지역의 문화자원특성 보존 및 '문화도시' 서초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초음악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갈음)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안)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 1척	성산대교 복단 성능개선공사	2017.09.12.~ 2018.04.22.	2017. 09.1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9.16. ~ 2017.09.30.	2017. 09.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다음기술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방화대교)	선박 1척 (고무보트)	방화대교 수중조사	2017.9.25.~ 2017.10.30.	2017. 9.1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잠수교)	선박 2척	잠수교 정밀안전진단	2017.09.18.~ 2017.09.20.	2017. 09.15.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